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고도화

오세욱·김대식·백용선·이하경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 고도화”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연구진

연구기관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세욱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김대식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백용선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하경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요약문

- 연구기간 2024년 04월 ~ 2024년 10월
- 핵심단어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 연구과제명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고도화

1. 연구목적

현재 건설업에 있어 선제적이고 자기 규율적인 안전 예방 활동으로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건설업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만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건설업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현행 실적평가 지표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평가지표에 대해 모든 건설업체 및 전문 건설업체까지 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적평가 지표를 개선하며 자발적인 안전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건설산업에 있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 강화 정책에 발맞춰 기존 산업재해 활동 실적 평가지표를 전반적인 건설산업에 적합하도록 개편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주요 연구결과

이 연구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3년도에 수행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지표를 대상으로 표적집단면접법(FGI)를 적용하여 건설업체의 규모별 특성을 가미하고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 기준에서는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로 3개를 설정하였으며,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에서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 및 행사 참여’,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으로 총 3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안전보건 활동 촉진’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으로 총 4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으로 총 2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또한 대분류의 배점만 확정(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40점, 안전보건 활동 촉진 40점,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점)하고, 세부평가 항목은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 건설업체의 규모별 특성을 가미하여 해당 항목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대분류 상에서 배점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갖게 하였다.

이 외 가점 부문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사업 활용 실적’, ‘시스템 비계사용 실적’,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으로 총 5개의 세부 평가 항목을 최대 5점 범위 내에서 가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표적집단면접법을 통해 도출된 평가항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안전보건 조직 적정성 및 역량,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에서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규모별 역량에 따라 비용 증가 우려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수급 문제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도출된 개선 지표에 대한 시범(안)을 통해 세부평가 항목의 현실화 노력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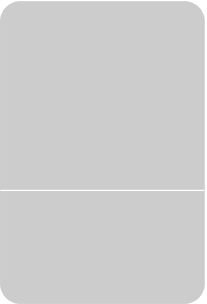
정부는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안전에 대한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 정책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과 같은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대표적인 자발적 안전문화 환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전방위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공공공사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개선(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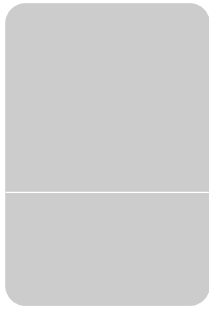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차장 서용수
 - ☎ 052) 703. 0847
 - E-mail seoys@kosh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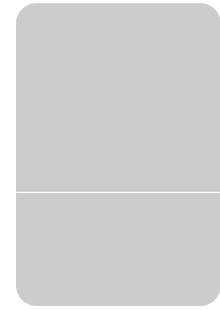
목 차

I. 서 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6
II. 이론적 고찰	11
1.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11
2. 선행 연구 고찰	24
III.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수립	31
1.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기본(안)	31
2.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개선 방향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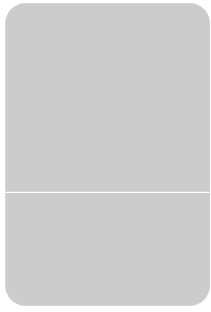
목 차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개선(안)	76
IV.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실태조사 ...	85
1. 실태조사 개요	85
2. 실태조사 결과	89
3. 실태조사 시사점	104
V.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및 효과분석 ...	111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방안	111
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효과분석	114



목 차

VI. 결론	123
참고문헌	125
Abstract	129
부록	133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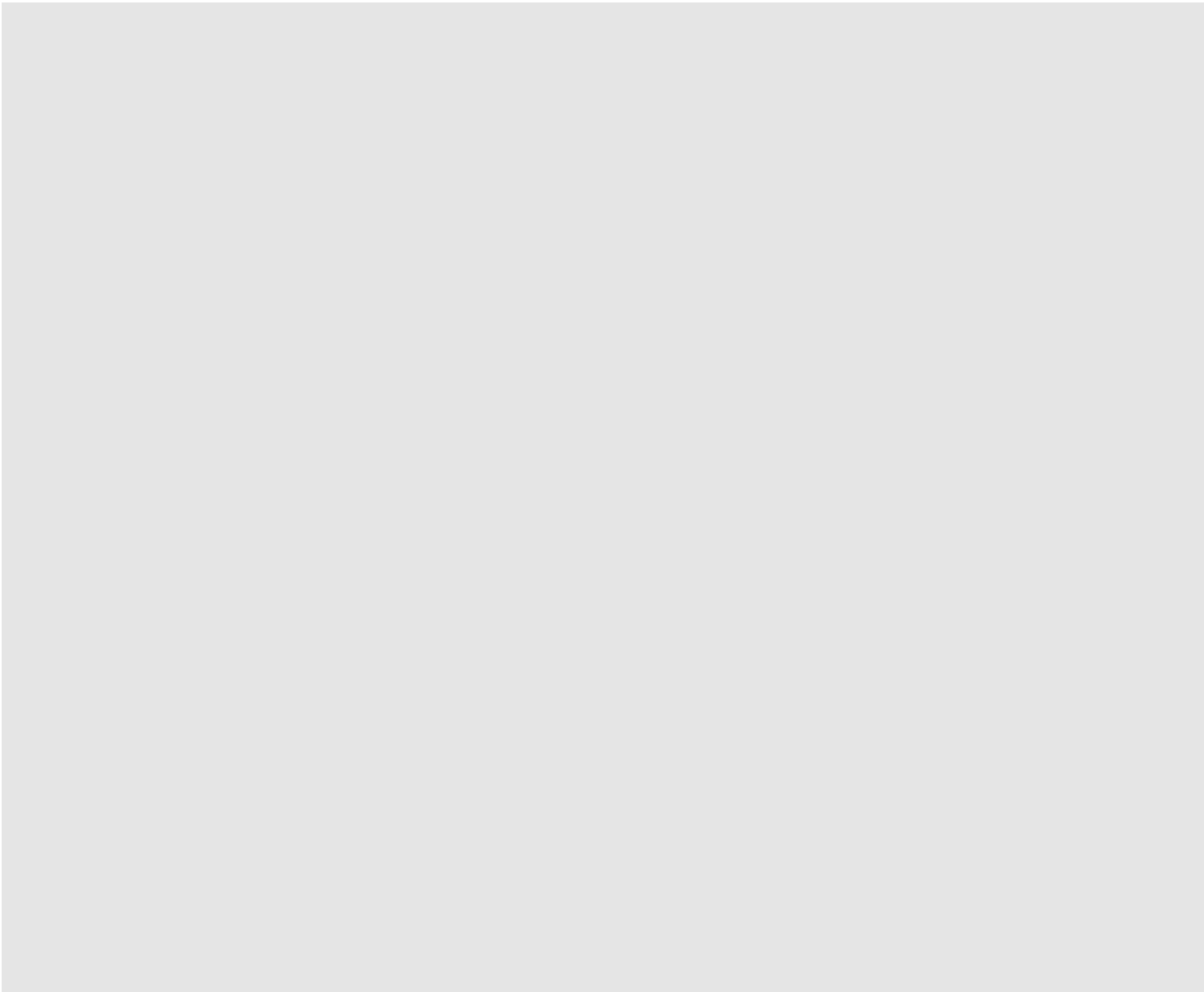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I-1〉 안전 관련 건설환경 변화	13
〈표 II-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14
〈표 II-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자 선정 예시	17
〈표 II-4〉 종합심사제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범 특례 운영(안)	18
〈표 II-5〉 건설안전 관련 분야 시범 특례 기준	19
〈표 II-6〉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시범 특례 기준	19
〈표 II-7〉 종합심사제 발주 현황	20
〈표 II-8〉 전체 총점 현황	21
〈표 II-9〉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점수 현황	22
〈표 II-10〉 공사수행능력 점수 현황	22
〈표 II-11〉 선행연구 고찰	24
〈표 II-1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군 분류 검토(안) 도출	25
〈표 III-1〉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31
〈표 III-2〉 안전보건 활동 촉진 세부평가 항목(안)	33
〈표 III-3〉 안전보건 체계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34
〈표 III-4〉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35
〈표 III-5〉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세부평가 항목(안)	37
〈표 III-6〉 Step 1. 종합 건설업체 의견수렴	43
〈표 III-7〉 Step 2. 전문 건설업체 의견수렴	48
〈표 III-8〉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50
〈표 III-9〉 안전보건 활동 촉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52



표 목차

〈표 Ⅲ-10〉 안전보건 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53
〈표 Ⅲ-11〉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54
〈표 Ⅲ-12〉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55
〈표 Ⅲ-13〉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건설업체 종합의견	57
〈표 Ⅲ-14〉 안전보건 활동 촉진 건설업체 종합의견	58
〈표 Ⅲ-15〉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건설업체 종합의견	61
〈표 Ⅲ-16〉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최종의견	63
〈표 Ⅲ-17〉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행사 참여 최종의견	64
〈표 Ⅲ-18〉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최종의견	66
〈표 Ⅲ-19〉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최종의견	68
〈표 Ⅲ-20〉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최종의견	69
〈표 Ⅲ-21〉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최종의견	70
〈표 Ⅲ-22〉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최종의견	72
〈표 Ⅲ-23〉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최종의견	73
〈표 Ⅲ-24〉 가점 항목 최종의견	74
〈표 Ⅲ-25〉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안)	77
〈표 Ⅲ-26〉 안전보건 활동 촉진(안)	78
〈표 Ⅲ-27〉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안)	81
〈표 Ⅲ-28〉 가점 항목(안)	82
〈표 Ⅳ-1〉 실태조사 개요	85
〈표 Ⅳ-2〉 대분류 기준별 배점 비중 결과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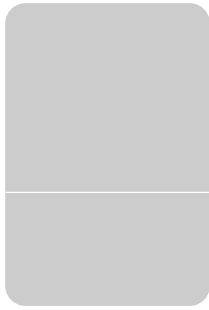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V-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배점 분포(안)	90
〈표 IV-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실태조사 결과	91
〈표 IV-5〉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부정 의견	91
〈표 IV-6〉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실태조사 결과	92
〈표 IV-7〉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부정 의견	93
〈표 IV-8〉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실태조사 결과	93
〈표 IV-9〉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부정 의견	94
〈표 IV-10〉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실태조사 결과	95
〈표 IV-11〉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부정 의견	96
〈표 IV-12〉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97
〈표 IV-13〉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부정 의견	97
〈표 IV-14〉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98
〈표 IV-15〉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부정 의견	98
〈표 IV-16〉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실태조사 결과	99
〈표 IV-17〉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부정 의견	99
〈표 IV-18〉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실태조사 결과	100
〈표 IV-19〉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부정 의견	101
〈표 IV-20〉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실태조사 결과	101
〈표 IV-21〉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부정 의견	102
〈표 IV-22〉 가점 항목 실태조사 결과	103
〈표 IV-23〉 세부평가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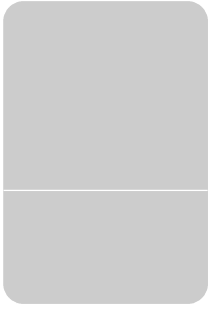
표 목차

〈표 IV-24〉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105
〈표 IV-25〉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107
〈표 V-1〉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반영 현황	112
〈표 V-2〉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세부평가 항목 현황	112
〈표 V-3〉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참여 업체 규모	113
〈표 V-4〉 전문업종별 시공능력 공시 고시금액 업체 수	115
〈표 V-5〉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예상 참여자 수	115
〈표 V-6〉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추가업무량 및 추가 비용	116
〈표 V-7〉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망만인율 현황	117
〈표 V-8〉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118
〈표 V-9〉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에 따른 편익 비용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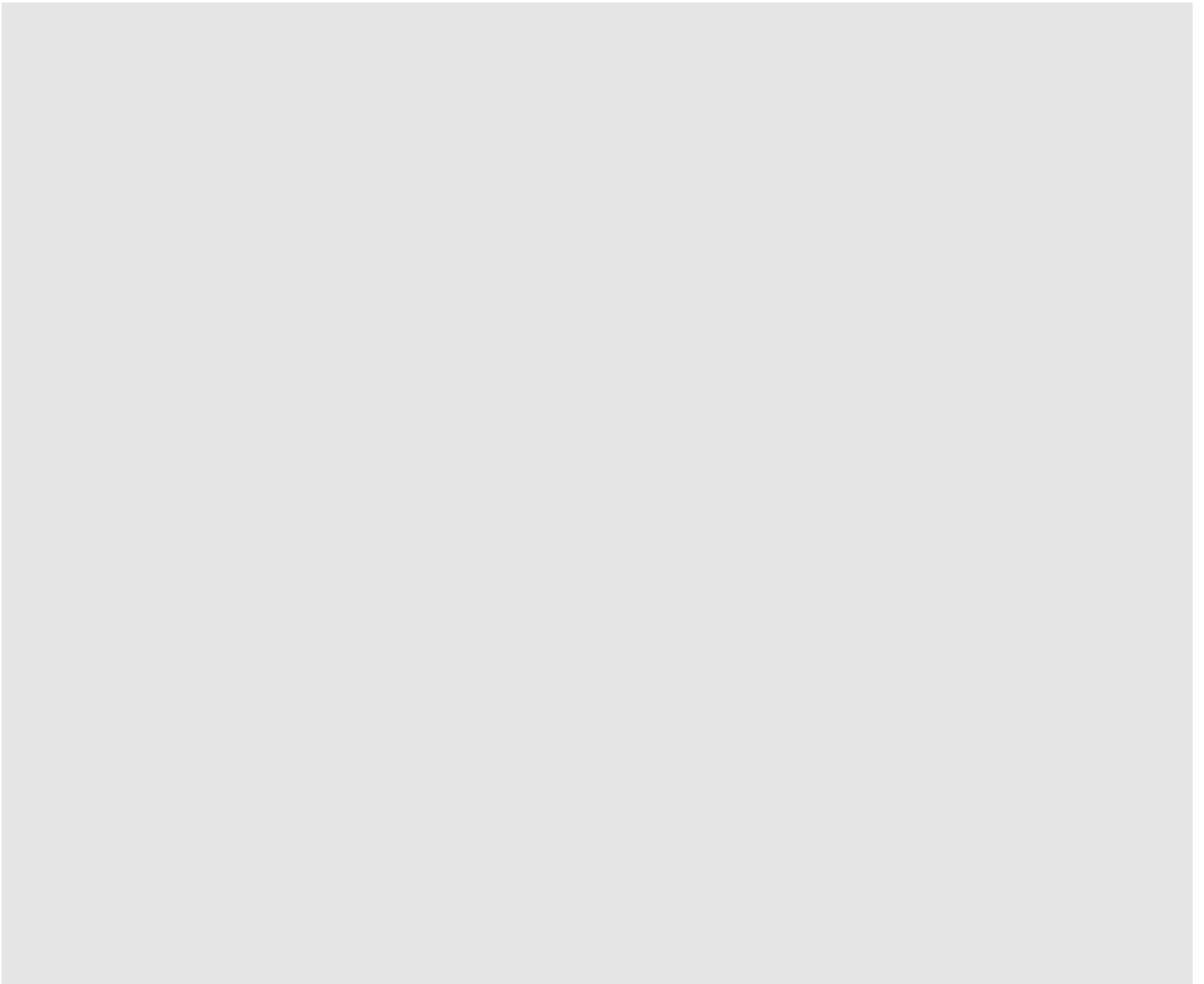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 방법	8
[그림 II-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결과 및 평가항목별 참여율 현황	15
[그림 II-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26
[그림 II-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개선(안)	27
[그림 III-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안) 진행 절차	39
[그림 III-2]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 개선(안)	76
[그림 III-3]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증빙 관련 연계 방안	80
[그림 IV-1] 대분류 기준 배점 비중 예시	86
[그림 IV-2] 세부 평가 항목별 의견수렴 예시	87
[그림 IV-3] 가점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예시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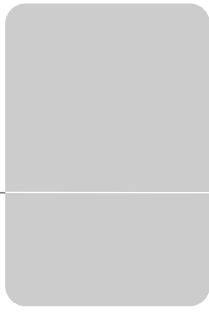


그림목차



I. 서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최근 정부는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재해 감축을 위하여 안전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이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으나, 건설업 산업재해율 및 사망 만인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실질적 재해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정부는 기존의 중대재해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과 같은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재해 발생률 및 사망만인율이 타 산업에 비해 현저히 높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수 발생 비중이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와 관련한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도출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20년 1월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현재 수준에서 절반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였으며, 2022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안전보건 조치강화 및 안전 관련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 로드맵을 시행하였다.

현재 건설업에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 활동으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운영되고 있으나, 종합건설업 시공 능력 평가액 순위 1,000위만을 대상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안전보건 활동 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있어 전방위적인 건설업의 안전 강화 대책으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 공사로 볼 때 연간 발주 물량을 건수 기준으로 공사비 100억 원 이하 비중이 90%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는 제도로 작동할 수 없는 구조라 할 수 있으며, 현재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활동 실적평가 지표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장기간에 걸쳐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 측면에서 평가 대상 및 평가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를 종합건설 및 원도의 지위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 건설업체까지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한다.

둘째, 확대된 대상을 바탕으로 건설공사의 규모 및 건설업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현행 실적평가지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

셋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건설업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용노동부는 2023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 확대 및 업체 수준별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를 대형, 중대형, 중형, 소형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로 현재의 평가지표를 5개의 상위항목에 12~15개의 하위항목을 설정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건설업체의 실질적 작동 방안과 객관성, 실효성 확보 등에 대한 검증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며,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을 통해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정책적 유도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건설업 전면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질적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적평가 지표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사후 규제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으나, 이전의 법령 및 제도 개선은 책임 대상 확대 및 처벌 강화 등 재해 발생 후 패널티 부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있어 재해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재해 발생 비중이 높은 소규모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예방 활동 유도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선제적 차원의 안전관리 촉진 방안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1,000순위 이내 업체로만 한정하고 있어 전방위적 건설업의 산재예방활동 역할을 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

아울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산업재해영향 평가지표는 2014년 처음 시행된 이후 그대로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 작동 여부에서도 한계점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시행한 선행연구에서도 객관성 및 실효성 확보 차원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산업재해 사전 예방 활동 강화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설 환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의 흐름에 대응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소규모 및 전문 건설업체를 포함한 전체 건설업체의 자율적 예방활동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의 평가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의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종합 및 전문 건설업체를 포함한 건설업체 전체로 평가 대상 확대 시 산업재해예방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업체 수준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고, 해당 평가 참여를 통해 실질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 결

과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의 확대 및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전방위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와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예상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설업의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건설업산업재해활동 실적평가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의 안전관리 환경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시점에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를 보다 객관적인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방안을 고도화 하기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적평가 지표의 실무 적용 방안 제시 ; 평가지표 정비, 과정지표 도입, 객관성 확보, 건설업체 수준별 차등지표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의 정비 및 항목별 세부 평가 내용 및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둘째, 특정 업체 및 현장을 토대로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실적평가 지표의 실효성 제시 ; 발주기관 및 전문가 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특정 업체 및 현장을 선정하여 실적평가의 평가 운영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셋째, 관련 고시 및 지침 개정안 제안 및 규제영향 분석 ; 제시한 실적평가 지표에 대한 고시 및 지침 개정안을 제안하고, 규제영향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넷째, 건설업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의 활성화 방안 제시 ; 입·낙찰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적평가 시 업체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안전수준 우수업체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성공적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진행한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 기준 재정비를 위한 이론적 고찰

- 1)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에 대한 법령 조사 ;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산업재해활동 평가지표의 개선 취지 및 한계점을 토대로 이 연구의 수행 기반을 수립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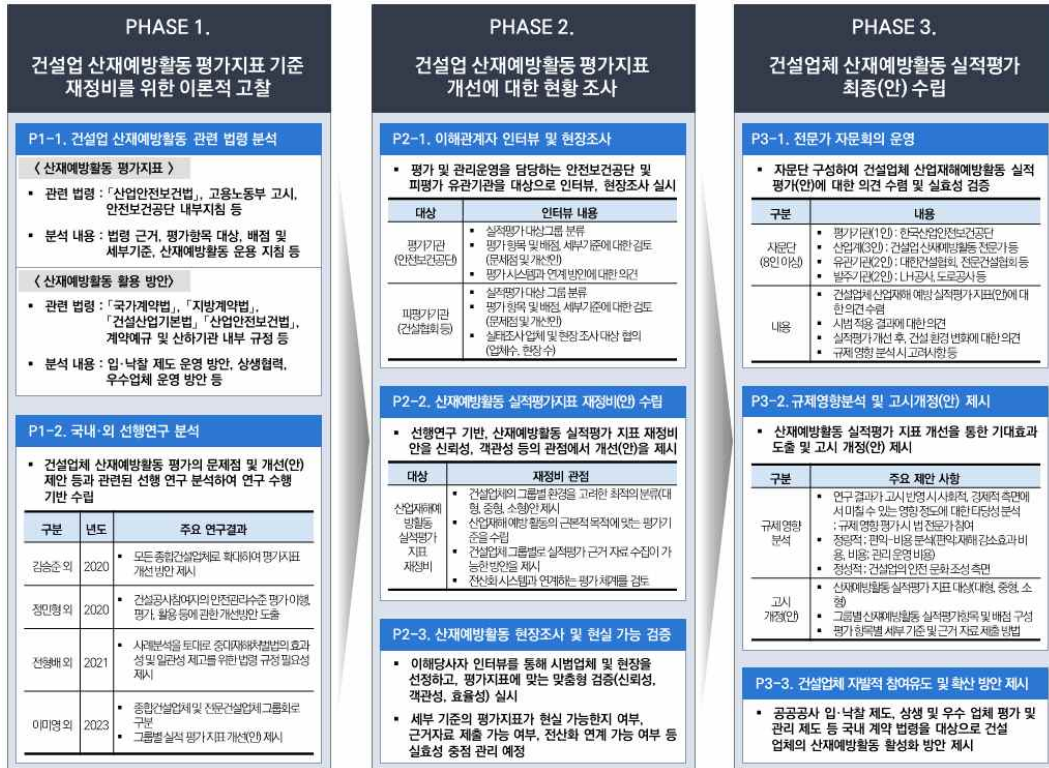
둘째,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 개선에 대한 현황 조사

- 1) 이해관계자 인터뷰 및 현황 조사 ;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 항목에 대한 유관기관 및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인터뷰를 통해 실적 평가지표의 구체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립하고자 한다.
-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재정비(안) 수립 ;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신뢰성, 객관성 등의 관점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셋째,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최종(안) 수립

- 1) 전문가 자문회의 및 모의 테스트 운영 ;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통해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안)에 대한 종합 의견을 수립하고, 건설업체 모의 테스트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 2) 산업재해예방활동 고시 개정(안) 제시 ; 규제영향 분석을 통한 고시 개정(안)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수행 내용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I -1] 연구 방법

Ⅱ. 이론적 고찰



II. 이론적 고찰

1.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1) 안전보건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 변화

건설업에 있어 산업재해는 단순히 근로자의 피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의 공사 기간, 원가, 품질 등에도 직·간접적인 파급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건설 프로젝트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재해 감축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정책 추진에 대한 근간은 산업재해의 후방적 처벌 위주가 아닌 선제적 예방 활동 강화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산업재해나 시민 재해가 일어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로 2021년 1월 제정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시행하도록(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예기간 2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령상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중대재해의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고, 중대재해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및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과 보상 체계를 수립하여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 및 처벌을 강화하여 중대 산업재해 및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법인 또는 기관 단위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원도급자의 사업주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현장 내 종합적인 관리책임자인 원도급자의 책임과 처벌 수준을 강화하였으

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공표에서도 사고 사망 만인율 감축을 목표로 처벌 중심 아닌 자기 규율에 대한 예방 중심으로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공사 사업자 선정 방식의 낙찰 제도에서도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를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역시 선제적 예방 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한 정책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건설업 환경 변화에 있어서도 건설 생산 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하였으며,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을 공사비 50억 이상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건설 현장의 안전보건 체계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도 기존의 공사 종류를 4개 종류로 재편하여 요율 상승 방안을 추진함과 동시에 재해 위험성평가 항목 신설 및 스마트 건설안전장비 사용 확대 등 산업안전보건관리 활용 체계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후 패널티 방식 보다는 건설 환경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자율적 사전 예방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해 정부 정책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표 II-1〉 안전 관련 건설환경 변화

구분		내용
산업 재해 경감	중대재해처벌법 (2022.01 시행)	• 사업주, 경영책임자가 안전 확보 의무 등 조치 소홀하여 중대 산업 및 시민 재해 일어날 경우 처벌 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2021.01 시행)	• 원청의 책임 및 처벌 수준 강화, 사업주의 처벌 수준 강화 등 법령 강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022.11 공표)	• 2026년 사고사망 만인율을 0.29‰로 감축 목표, 처벌 중심 아닌 자기규율에 의한 예방 중심으로 실행
	안전 관련 평가 항목 강화 (시행 예정)	• 적격심사, 종심제 등 입·낙찰 제도상에 안전 관련 평가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 검토
건설 환경 변화	건설업종 통합 (2021.01 시행)	•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2023.07)	• 공사비 50억(기존 120억)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을 강화
	건설업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개정 (시행 예정)	• 공사종류를 4개 종류(기존 5개 종류)로 재편하고 공사비 효율 현실화 방안 수립 • 재해위험성평가 항목 신설 •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사용 항목 신설 등

2)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건설업체의 자구적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여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 등에 반영함으로써 건설업체의 자율적 안전 활동을 조성하고자 2014년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4조1항7호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다음 각 목의 사항

나.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는 등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른 가점 부여

해당 법령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과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세부지침’에서 평가 절차 및 항목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배점*		비고
				1)	2)	
공통 항목 (100점)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참여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1회	25점	25점	사업주 안전 의식 강화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1.5점/회	15점	25점	
	선임 안전·보건 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60% 이상인 경우	40점	40점	-	상시 안전 보건 활동 촉진
		50% 이상인 경우	35점			
40% 이상인 경우		30점				
30% 이상인 경우		25점				
20% 이상인 경우		20점				
20% 미만인 경우	15점					
안전보건 조직	조직구성 및 전담직원 (업체규모별**차등기준 적용;1군30위내/1군30위 외/2군/3~4군)	-	20점 (0/10 /20)	50점 (0/25 /50)	사전 안전 보건 활동 촉진	
가점 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 시스템(KOSH A-MS) 인증	인증 유지 인증 신청	5점 2점	5점 5점	활동 촉진	

* 1)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사업장 보유 건설업체,

2) 제1호의 건설업체를 제외한 건설업체

** 군별 분류기준(시평액순위) : 1군(1위~100위), 2군(101위~300위),

3군(301위~600위), 4군(601위~1,00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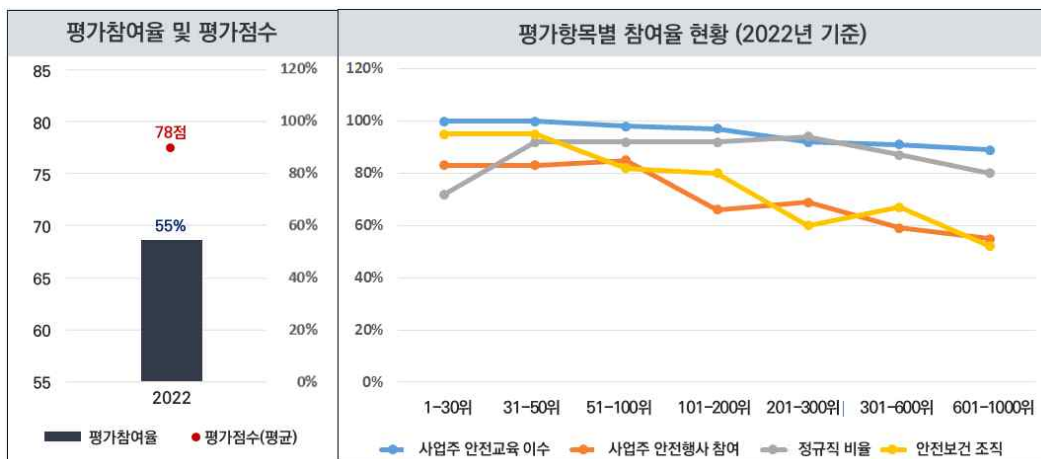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결과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2014년부터 시공능력 평가액 1,000 순위 내 업체를 대상으로 시작되었으며,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대상 업체의 참여율은 55%, 참여자의 평균 점수는 78점 내외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업체의 평가 항목별 점수 분포를 검토한 결과 ‘사업주 안전교육 이수 부분 93%’ >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87%’ > ‘안전보건조직 구성 68%’ > ‘사업주 안전행사 참여 65%’ 순으로 분석되었다.

규모별로 볼 때 ‘사업주 안전교육 이수 부분’은 규모별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사업주 안전행사참여’ 및 ‘안전보건조직 구성’은 규모가 클수록 높은 점수를 받고,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사업장 규모 및 개수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안전관리자 배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장 개수에 따라 안전관리자 수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 수급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결과 및 평가항목별 참여율 현황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결과로 볼 때 시사점을 정리하면 2014년 이후 대형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실적평가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거의 충족한 상태로써 평가의 변별력이 낮아져 현행 실적평가 지표는 대형 업체의 산재예방활동 향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소형 업체들은 평가지표 상에 참여율 및 평가점수가 현재 수준에서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업 재해 발생이 소규모 업체에서 큰 비중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소규모 업체의 산재예방활동 참여에 대한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계약예규」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요령(PQ 기준)에서 신인도 가점 최대 +1.0점을 준용할 수 있으며, 조달청 「시설공사집행기준」에서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에서 구체적인 배점 부여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합심사제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임 항목의 가점 항목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자 선정 예시

구분		내용		점수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1.0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90점 이상 B. 80점~90점 미만 C. 70점~80점 미만 D. 60점~70점 미만 E. 50점~60점 미만 F. 50점 미만	+1.0 +0.8 +0.6 +0.4 +0.2 0.0
	종합심사제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90점 이상 B. 80점~90점 미만 C. 70점~80점 미만 D. 60점~70점 미만 E. 60점 미만	+0.8 +0.6 +0.4 +0.2 0.0

입찰참가 사전 자격심사는 종합심사제에서 입찰참가 자격 여부를 부여하는 입찰제도로서 낙찰제도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종합심사제에서의 사회적 책임 가점 항목에서는 ‘사고사망만인율’와 함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를 각각 +0.8점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각각의 배점이 아닌 최대 +0.8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별도로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건수’ 등을 감점의 형태로 적용하고 있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낙찰제도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확대

2023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선진화 방안을 통해 건설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합심사제의 건설안전 항목을 사회적책임 가점에서 배점 전환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주요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특례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II-4〉 종합심사제 공사수행능력 평가 시범 특례 운영(안)

기존				시범특례(안)				
심사항목			배점	심사항목			배점	
배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배점	전문성	시공실적	15점	
		매출액비중	3점			매출액비중	3점	
		배치기술자	14점			배치기술자	14점	
	역량	시공평가	15점		역량	시공평가	13점	
		공동수급체구성	2점			공동수급체구성	2점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1점		일자리	건설인력고용	1점	
가점	사회적 책임	건설안전	0.8점	가점	안전	건설안전	2점	
		공정거래	0.4점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0.4점
		지역경제기여도	0.8점				지역경제기여도	0.6점
합계			40점	합계			40점	

각 발주기관의 시범특례 사항을 살펴보면 표 II-4에서와 같이 안전을 배점으로 전환하고 타 항목의 배점을 축소하며, 사회적 책임은 기존 +2점의 가점을 +1점의 가점으로 축소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을 배점제로 전환하고 안전 관련 평가항목에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처벌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방안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업재예방활동 실적평가는 배점으로 각 1점씩 부여하고 산업재해발생보고위반, 안전보건비 사용위반, 법령에 따른 행정처벌 등은 발생 건수에 따라 0점~-0.4점까지 감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II-5〉 건설안전 관련 분야 시범 특례 기준

심사항목	심사요소		배점
건설안전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을 기준으로 배수 차등 평가	1.0점
	산업재해발생 보고 위반건수	산업재해 발생 보고 위반건수에 대한 차등 평가	-1.0점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 점수 차등 평가	1.0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련 위반건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사실이 있는자에 대한 건수 차등 평가	-0.4점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행정처벌을 부과받은 횟수 차등 평가	-0.4점

반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표II-6에서와 같이 최근 1년간 점수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은 1.0 만점을 부여하고, 점수 구간별로 차등을 주어 50점 미만 시 0.5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6〉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시범 특례 기준

구분	내용		점수
종합심사제 건설안전(배점)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90점 이상	1.0
		B. 80점~90점 미만	0.9
		C. 70점~80점 미만	0.8
		D. 60점~70점 미만	0.7
		E. 50점~60점 미만	0.6
		F. 50점 미만	0.5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안전관리능력평가 (배점)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 자	A. 90점 이상	1.5
		B. 80점~90점 미만	1.3
		C. 70점~80점 미만	1.1
		D. 60점~70점 미만	0.9
		E. 50점~60점 미만	0.6
		F. 50점 미만	0.2

이와 같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입찰제도(PQ) 뿐만 아니라 낙찰제도(종합심사제)까지 확대되고, 기존의 가점 방식이 아니라 배점 방식으로 전환됨으로써 건설업체에게는 기존보다 더욱 중요한 관리 항목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예방 활동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확대 시사점

최근 주요 발주기관이 운영한 종합심사제는 연평균 43건, 평균 공사비는 일반 중심제 약 701억 원, 고난도 중심제 약 668억 원, 평균 입찰자 수는 일반 중심제 약 54개, 고난도 중심제 약 22개가 경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¹⁾.

〈표 II-7〉 종합심사제 발주 현황

구분	일반 중심제			고난도 중심제		
	발주건수	예정가격 (억원)	입찰자수	발주건수	예정가격 (억원)	입찰자수
2016~ 2017	48	668.9	48.2	38	717.2	22.9
2018~ 2019	8	650.3	66.1	18	692.2	23.1
2019~ 2020	10	816.1	49.3	12	637.3	23.3
2020~ 2021	21	708.3	53.0	19	626.3	21.2
평균	21.75	710.9	54.2	21.75	668.3	22.6

일반 중심제의 종합 점수를 고려해 볼 때 평균적으로 사회적 책임점수가 미포함 될 경우 97.23점, 사회적 책임점수가 포함 될 경우 97.90점으로 약 0.67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만점자 비율을 살펴보면 사회적

1) 공공계약선진화 방안 연구(2022), 기획재정부

책임점수가 미포함 될 때 0.05%에서 15.10%로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적으로 만점자가 약 7.9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나의 사업당 만점자가 약 7.96개 존재하며, 이들 중 동점자 처리기준²⁾에 의해 1개의 업체가 낙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8〉 전체 총점 현황

구분	전체점수(사회적책임 미포함)			전체점수(사회적책임 포함)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2016~2018	97.4	0.20%	0.1	97.7	12.2%	5.9
2018~2019	97.4	0.00%	0.0	98.0	8.3%	5.5
2019~2020	96.4	0.00%	0.0	97.4	16.1%	7.9
2020~2021	97.7	0.00%	0.0	98.6	23.7%	12.6
평균	97.23	0.05%	0.02	97.90	15.10%	7.96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점수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공사수행 능력점수는 49.66점으로 만점자 비율이 56.3%에 달하며, 가격점수는 48.24점으로 24.37%의 만점자 비율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가격점수를 모두 만점 받은 자가 전체에 15.10%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동점자 처리 기준 ;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종합심사제 낙찰받은 계약 금액이 적은 자
4. 추첨

〈표 II-9〉 공사수행능력 및 가격점수 현황

구분	공사수행능력 (50점, 사회적책임 포함)			가격점수(50점)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2016~ 2018	49.7	52.7%	25.4	48.0	21.0%	10.1
2018~ 2019	49.4	22.8%	15.1	48.6	22.5%	14.9
2019~ 2020	49.7	69.4%	34.2	47.6	22.3%	11.0
2020~ 2021	49.9	80.1%	42.5	48.7	31.5%	16.7
평균	49.66	56.30%	29.32	48.24	24.37%	13.20

공사수행능력 점수만을 살펴보면 최근 평균 48.99점에서 49.66점으로 약 0.67점이 상승하였으며, 만점자 비율이 1.33%에서 56.3%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건설업체는 공사수행능력 점수 자체만으로 만점자가 존재하지 않고 평균 48.99점을 부여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책임 가점 2점 중 어느 정도의 점수를 가점으로 받을 수 있는가에 따라 낙찰자 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I-10〉 공사수행능력 점수 현황

구분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미포함)			공사수행능력(사회적책임 포함)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평균점수	만점비율	만점자수
2016~ 2017	49.30	0.55%	0.30	49.70	52.7%	25.4
2018~ 2019	48.70	0.00%	0.00	49.40	22.8%	15.1
2019~ 2020	48.70	0.00%	0.00	49.70	69.4%	34.2
2020~ 2021	49.00	4.76%	2.50	49.90	80.1%	42.5
평균	48.99	1.33%	0.70	49.66	56.30%	29.32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범특례에서 건설안전을 가점 0.8점에서 배점 2점으로 전환하게 되면 기존의 + 점수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가 90점을 넘지 않을 시 - 점수로 처리됨을 의미한다.

또한 기존의 사회적책임 점수를 보완할 폭도 줄어들게 되므로 종합심사제의 공사수행 능력 만점자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며, 결국 건설안전의 점수 여부가 낙찰의 당락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져 사망만인율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점수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 시시비비의 소지가 커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무엇보다 공정성, 투명성을 고려하여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써 의미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산업재해예방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는 주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며, 발주기관, 사업주 등 다양한 참여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표 II-11〉 선행연구 고찰

연구 제목	연구 내용
건설업 산업재해예방실적평가 산정지표 개선용역 (김승준, 2020)	평가대상을 시평액 1,000순위 이내에서 모든 종합건설업체로 확대하여 건설업체의 전면적인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에 따른 산정지표 개선을 연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개선 (정민형, 2020)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이행, 활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연구
건설발주기관의 안전경영 평가 모델 개발 (신성우, 2017)	건설업의 실질적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의 자발적 안전 활동 제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발주자 중심의 안전경영 평가항목 및 모델을 개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체계 개발 (신철식, 2014)	건설공사 참여주체별 안전관리 역량 측정하여 자발적인 안전역량 제고 유도하기 위한 안전역량 평가체계 구축 방안 제시
Factor Analysis-based Studies on Construction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 China (Pang, 2004)	건설현장의 설문 및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관리 성과에 미치는 요소로 안전점검, 안전회의, 안전법강화, 안전교육, 안전 의사소통, 안전협동을 위한 노사관계, 안전자원 등을 도출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방안 (전형배, 2021)	건설업의 산업재해 사례 분석을 실시하여 중대재해 처벌법의 효과성 및 일관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규정 필요성 제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 확대 및 업체 수준별 평가지표 개선 (이미영, 2023)	건설업체의 자율적 사전 예방 활동을 유도하고 전체 건설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평가지표를 전면 재검토 및 새로운 개선 방안을 제시

이 중 2023년에 수행된 연구는 최근 정부 정책에 건설업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부각하고 건설업체의 자율적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하고자 현행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를 전면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선행연구는 건설업종의 통합에 따라 실적평가 대상을 기존의 시평액 1,000 순위에서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평가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실효성과 객관적 근거에 의한 평가지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실적평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와 공공공사 규모별 낙찰제도를 고려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의 그룹을 아래 표 II-12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II-1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군 분류 검토(안) 도출

공사비 규모	입·낙찰제도		분류 (안)	건설업체				안전관리 자 선임의무
	입찰제	낙찰제		종합건설업체 (시평액순위/규모)		전문건설업체 (시평순위)		
300억 이상	PQ	중심제 대형공사 (T/K, 대안, 기술제안)	대형	종합 대형	1~50위 (8,328억~)	-		의무(전임) - 건120억 - 토150억
200억 ~300억 미만	비PQ	PQ (200억원 +18개 공종) 간이중심제	중 대형	종합 중대형	51~200위 (1,331억~)	전문 대형	20위	의무(겸임) ; 50억 이상 선임의무 없음
100억 ~200억 미만	비PQ		중형	종합 중형	201~1000 위(237억~)	전문 중형	200위	
100억 미만	비PQ	적격심사	소형	종합 소형	1,001위 이상	전문 소형	200위 ~	

또한, 관련 법령, 유사사례 조사, 전문가 협의체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적평가 기준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개선(안)에서는 예방활동 주제, 활동시점, 활동내용, 활동 목표로 단계별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동 주체에서는 사업주 및 안전관리자 전담조직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전담임원 및 관리자급 임직원, 협력업체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평가항목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 시점에서는 사전활동 및 상시활동 뿐만 아니라 사후활동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활동 내용에서는 안전의식 및 안전보건활동 뿐만 아니라 안전문화 역량, 안전관리체계, 사후관리 개선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II-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기본 방향

이를 토대로 최종 활동 목표에서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활동 촉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강화, 안전관리체계 강화,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이라는 활동 목표를 최종 설정하여 5개의 상위항목과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른 10개~15개의 하위항목, 3개의 별도 가점항목으로 구성된 평가 항목을 개선(안)으로 도출하였다.

기존안			변경안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공통항목 (100점)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참여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안전 행사(점검 등) 참여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선입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	60% 이상인 경우 50% 이상인 경우 40% 이상인 경우 30% 이상인 경우 20% 이상인 경우 20% 미만인 경우	안전·보건 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가점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인증 유지 인증 신청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제도 수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안전 문화 확산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원	
			안전 역량 강화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관리자급 교육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사용 실적	
				사고·재해 재발 방지 노력 (조사,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안전보건 관리 성과 관리 (측정, 모니터링, 개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활용 수준	

[그림 II-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 개선(안)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기준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의 추가적인 검증이 요구된다.

첫째, 개선(안)의 평가지표 정비 ; 제안된 평가지표에 있어 사전 안전관리 예방 활동을 목표로 하고, 보다 신뢰성, 객관성,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 재정비하고자 한다.

둘째, 과정지표의 도입 ; 제안된 평가지표에 있어 단순 행사성 평가 항목은 가급적 지양하고, 산업재해예방활동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지표 재정비하고자 한다.

셋째, 전산시스템 연계 방안 고려 ;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정량적 데이터 기반 및 피평가자의 제출항목 서류 최소화를 고려한 전산 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수준별 차등지표 ; 건설 업체별 시공능력 순위, 군별 분포도 등에 따라 업체의 안전 수준별 평가지표 현실화 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건설업체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함과 동시에 전산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실증적 검증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근거로 건설업에 있어 사전 안전관리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구성하고자 한다.

**Ⅲ.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수립**



Ⅲ.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수립

1.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기본(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안)은 기존의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조직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방식을 대분류 기준으로 4개의 배점 항목과 1개의 가점 항목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1)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는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 회사의 안전경영 방침을 수립하고, 사업주의 책임하에 산재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 항목과 항목별 검토사항을 나열하면 다음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가 내용	추가 검토 사항
사업주 안전 의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 이수 방법 및 횟수 - 증명 방법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사업주가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안전관련 행사 참여	- 행사 참여 횟수 - 행사 참여 증빙 방법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안전보건 경영 목표, 정책, 관련 규정 수립 여부	- 매뉴얼 구성 내용 및 점수 차등화 - 증빙 방법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보고 이행, 조치 결과 확인	- 사고 보고에 대한 서명 날인 확인 문서 증빙방법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먼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교육과 관련한 인증기관으로부터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교육 수령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수행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한 이수 횟수를 건설업체 규모마다 얼마나 차등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주의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는 사업주가 현장에 참여한 증빙방법과 건설업체 규모마다 얼마나 차등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에서는 해당 안전보건 경영방침 내용과 증빙 방법, 건설업체 규모마다 차등 방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사업주 사고보고 조치 결과 확인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사고 보고 여부 및 조치 결과 확인 여부를 증빙하는 방법, 중대재해 처벌 법령과 어떻게 차별화를 가져갈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활동 촉진에서는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적정 수준의 안전보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지, 책임 및 권한 예산 등을 확보하고 현장 안전보건 관리 지원 수준과 예방활동 이행 수준 가점을 통해 상시 안전보건 활동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 항목과 항목별 검토사항을 나열하면 다음 표 III-2와 같다.

〈표 Ⅲ-2〉 안전보건 활동 촉진 세부평가 항목(안)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가 내용	추가 검토 사항
안전 보건 활동 촉진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	본사 안전보건 조직 유무 및 팀원 구성 수	- 본사 조직 규모에 대한 증빙자료 - 규모별 점수 차등화 방안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역량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원수, 팀원 자격 보유 현황	- 조직원의 자격 증빙 방안 - 규모별 점수 차등화 방안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의 선임의무 인원 대비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여부 증빙 여부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의 선임의무 인원 대비 정규직 비율	- 정규직 여부 증빙 여부 - 대형 업체만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	당해연도 준공 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	- 집행률이 의미 있는지 여부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실적	-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횟수 증빙 방법 - 소형 업체만 해당
	본사 안전보건관리 지원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이행실적(현장별 평균 점검수)	- 현장 점검 증빙 횟수 증빙방법 - 사업주 안전점검과 차별화 여부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과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역량에서는 실제 안전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안전 관련 자격 사항 등에 대한 증빙 방법과 함께 건설업체의 규모별 조직구성 평가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서는 정규직에 대한 증빙 방법을 검토하여야 하며, 대형 업체만 해당될 수 있는 보건관리자에 대해서는 규모별 점수 차등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에 대해서는 법적 정산 의무를 갖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률이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에서는 소규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이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술지도 이행만으로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의미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사 안전관리 지원 조직에서는 현장점검 증빙 및 평가 방법, 사업주 안전점검과 차별화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체계 강화 분야는 안전보건 계획의 수립과 이행 및 관리, 사고재해 발생 조치,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건설업체 내부의 안전보건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 항목과 항목별 검토사항을 나열하면 다음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안전보건 체계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가 내용	추가 검토 사항
안전 보건 체계 강화	안전 보건 계획 수립 및 관리	안전보건 경영지침을 위한 세부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및 이행 여부	-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차별화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 증빙 및 평가 방법
	사고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 마련하고 공유 이행 여부	-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차별화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 평가 방법
	위험 및 유해 요인 제거 노력	위험성평가 절차 및 지침 마련 공유 여부	- 위험성 평가의 평가 방법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관리’와 ‘사고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분야에 있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의 내용과 중복성이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도 중복성이 있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 및 유해요인 제거 노력’에서는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지침 마련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4)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에서는 안전관리 전담자 이외에도 협력업체를 포함한 해당 공사 참여자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을 위한 지원, 협력 등을 유도하여 사업장 내 안전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 평가 항목과 항목별 검토사항을 나열하면 다음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세부평가 항목(안)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가 내용	추가 검토 사항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협력업체 선정시 안전관리 수준 반영 여부	- 증빙 및 평가 방법 - 규모별 차등 기준 - 종합건설업체만 해당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원	협력업체에게 안전보건관리 교육비 지원현황	- 증빙 및 평가 방법 - 규모별 차등기준
	안전보건 관리 공유체계	현장 TBM 운영체계 및 지침 마련, 공유 여부	- 증빙 및 평가 방법
	관리자급 교육 실적	안전보건 전담자 이외 관리자급 연간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실적	- 증빙 및 평가 방법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실적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	- 시스템 비계 비용 수반 문제 - 평가 방법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업체가 내부 기준으로 마련하고 있는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원’의 경우 협력업체에게 안전보건 관리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 증빙 및 평가 방법, 건설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공유체계’의 경우 TBM(Tool Box Meeting)은 사업장 내 통상적인 의무사항이며, 해당 여부에 대한 별도의 운영체계를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와 증빙 및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관리자급 교육실적’에서는 관리자 대상 및 교육 이수 방법 등 구체적인 평가 체계 및 증빙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의 경우 규모가 있는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설업체의 비용이 추가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고려한 평가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성과에 대한 측정,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노력, 사고 재해 재발 방지에 대한 체계 수립 등 사후관리 노력을 통해 재해 예방을 유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세부평가 항목과 항목별 검토사항을 나열하면 다음 표 III-5와 같다.

〈표 Ⅲ-5〉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세부평가 항목(안)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가 내용	추가 검토 사항
사후 관리 및 개선 노력	사고재해 재발 방지 노력	연간 재해원인 조사 분석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공유	-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차별화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 증빙 및 평가 방법
	안전보건 관리 성과관리(측정, 모니터링, 개선)	매년 안전보건관리 목표 달성 수준 측정 및 모니터링, 개선 노력	- 안전보건경영방침과 차별화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령과 차별화 - 증빙 및 평가 방법

‘사고재해 재발 방지 노력’과 ‘안전보건 관리 성과관리’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에서도 내용이 포함되어 이와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의 내용과도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 차별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6)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안)에 대한 시사점

이상과 같이 2023년 수행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안)을 검토하였으며, 객관성 및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 데이터 수집의 용이성과 대상자별 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평가 증빙 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 대부분의 세부평가 항목에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증빙 방법론이 필요하며, 가급적 객관화 된 지표와 기존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평가 항목 중복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세부평가 항목 중 일부 안전보

건경영방침, 목표 수립 및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와 차별화된 평가 항목을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규모별 차등 방안 구축 필요 ; 세부평가 항목 중 일부는 대형 및 소형 업체 간 규모의 경제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차등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 ; 세부평가 항목 중 일부는 객관적 평가 방법(대상, 횟수 등)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 평가에 따른 평가 구체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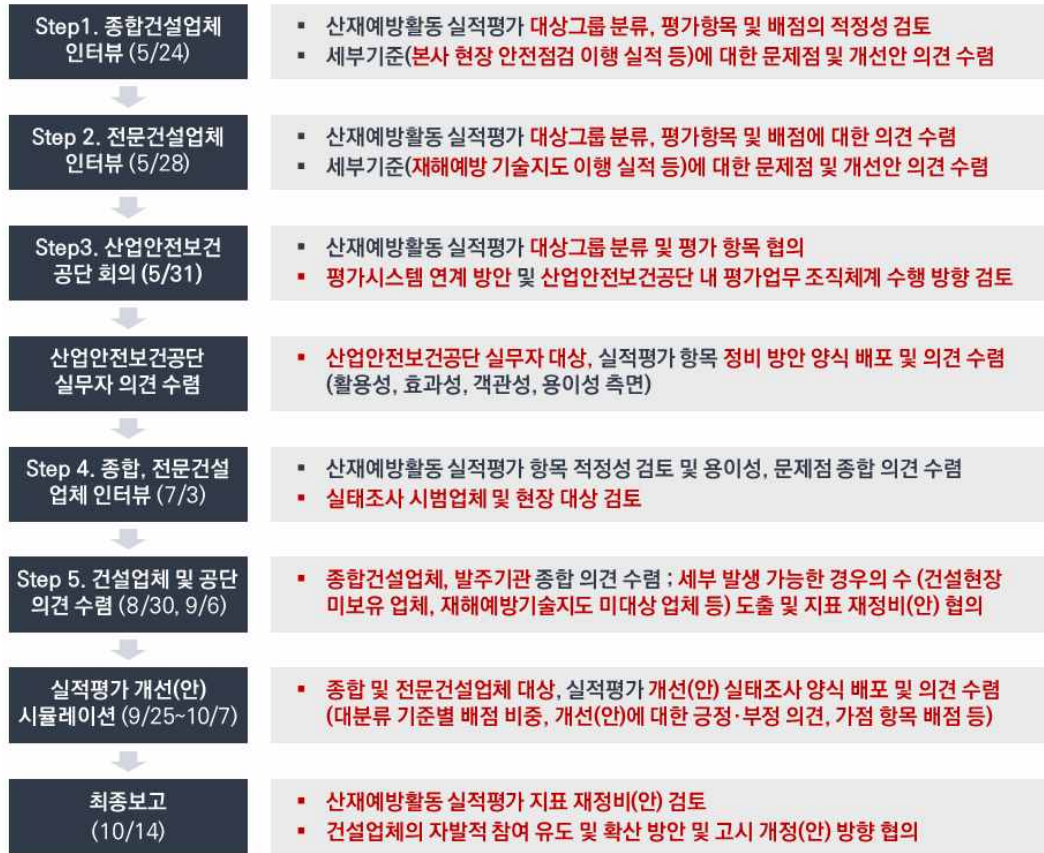
기존에 제시된 개선(안)을 토대로 항목별 주요 추가 검토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방법을 통해 수행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여러 항목에 대해 객관성, 공정성, 데이터 수집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의논 사항에 대해 나열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Step 1.에서는 종합건설업체를 대표하는 대·중·소 업체 6개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여러 항목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Step 2.에서는 전문건설업체를 대표하는 3개 업체와 인터뷰를 통해 여러 항목에 대해 전문건설업체 입장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Step 3.에서는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의견수렴한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입장에서 객관성, 실효성, 데이터 수집 용이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Step 4.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을 토대로 다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와 의견을 수렴한 후 Step. 5에서 최종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지표를 도출하였다.



[그림 III-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안) 진행 절차

Step 1. 종합 건설업체 의견수렴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에게 사고 보고 및 조치결과 확인에 있어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경미한 사고를 포함하면 연간 약 1,000건 정도이며, 승인 건은 약 600~700건 정도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업주가 모든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처리 소요가 크고 조치 내용에 대한 평가 기준도 모호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고보고 체계 및 절차 시스템 보유 여부만을 평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주에게 사고 보고 및 조치결과에 있어 소형 업체의 경우 보고에 대한 결과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평가에 반영하는 실효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모든 건수를 제출하게 되면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에서 사고보고서나 조치결과서 샘플을 제시하고, 양식에 맞게 조치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만 확인하는 것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사업주에게 사고보고 및 조치결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업주 이행 점검 여부 확인 항목들과 중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대형 공사의 경우 공사금액 800억(토목 1,000억)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배치되기 때문에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이를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은 정산 항목이고 안전관리 사용의 의무 사항으로써 대부분 초과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집행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별도의 회사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추가 지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분야는 안점점검 현장 이행실적을 횡수로 평가하는 것은 증빙에 대한 행정처리가 많아져 명확한 증빙이 되지 않을 시 객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소형의 경우 현재 기술지도나

외부점검(발주처 등)이 이미 다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더욱 과중될 수 있어 횡수 검토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에서 공공공사의 기술지도 기관은 발주처가 의무 선정하여 현장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업체에서 받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민간공사에 한해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관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반드시 반기 1회 경영방침을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사업주의 경영방침 수립과 연계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험 및 유해 요인 제거 노력의 경우 중대형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사업주의 경영방침 수립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를 현장별 맞춤형으로 제작되는 위험성 평가 매뉴얼은 제출한다 하더라도 수많은 사업장을 평가 기준에 따라 반영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위험 및 유해 요인인 대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중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협력업체 선정 시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평가항목으로 구성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만, 건설업체별로 협력업체 평가 기준이 상이하고 협력업체 선정 관련 자료는 대외비성 자료이므로 증빙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협력업체 선정 기준 매뉴얼 제출 유무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원은 대형 건설업체 중에서도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만 안전수준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그 외 건설업체는 현실적으로 안전교육 지원비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에 있어 현장 TBM은 대부분 운영되고 있으나, 소형 업체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장의 현장 TBM 운영 체계를 증빙하기 보다는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리자급의 안전교육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기준에 준하여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운영하고 있는 교육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현장 내 모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횟수까지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행정소요와 작업공정까지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실적은 대형 건설회사의 경우 대부분 설계단계에 이미 적용되어 의무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중소형 업체의 경우 원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점보다는 가점 항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건설협회에서는 상호협력 평가 항목 중 하나로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평가 항목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마.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사고·재해 재발 방지 노력은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중대한 사고는 발생건에 대해 별도 보고서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건설업체 내 공유방법에 대한 정의도 명확해야 하며, 교육 자료에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관리 성과관리에서는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 계획 수립에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항목이며, 소형건설업체의 경우 문서화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행정소요가 부담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시사점

종합적으로 볼 때 평가 항목에 구성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를 평가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모든 평가 항목을 증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와 함께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평가를 확인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Step 1. 종합 건설업체 의견수렴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종합건설업체 의견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 모든 사고 보고를 확인하는 데에는 행정 처리 소요 커지고 평가기준도 모호 예상 - 사고 보고체계 및 절차 시스템 보유만을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
안전보건 활동 촉진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 대형공사에서만 배치되기 때문에 정규직 비율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따라서 안전 관리자와 통합 평가하는 방안 검토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집행 수준을 평가하

	수준	는 것은 의미 없으며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안전관리비를 산정하고 지원하는지 여부를 검토 필요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안전점검 현장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증빙에 대한 행정처리가 많아지며, 명확한 증빙이 되지 않으면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음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 민간공사에 한해서 평가항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안전보건 체계강화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관리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반드시 반기 1회 검토하게 되어 있어 사업주의 경영방침 수립과 연계 방안 검토
	위험 및 유해 요인 제거 노력	- 중대형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관련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음. 현장 맞춤형 평가 매뉴얼을 제출하는 것 한계 존재. 따라서 위험성 평가 매뉴얼 구축 여부를 판단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 중대형건설업체는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관련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선정 관련자료는 대외비성으로 증빙하는데 한계 존재하므로 매뉴얼 운영 기준 여부로 판단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 협력업체 교육 지원을 자체 운영하는 것은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만 가능. 현실적인 대안 검토 필요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	- 현장 TBM 운영은 의무사항이며, 사업장마다 TBM 운영체계를 증빙여부 판단하기 보다는 건설업체 내 매뉴얼 구성 여부로 판단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 대형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자사 내 운영 기준 마련하고 있음. 다만 횡수와 증빙자료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수립

		하는데 한계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 대형 건설업체는 의무 사용 소형건설업체는 원가부담 발생하므로 형평성이 문제임 따라서 배점보다는 가점 전환 필요하며 건설협회 상호협력 평가와 연계 가능
사후관리 및 개선노력	사고재해 재발방지 노력	- 대형은 중대사고 발생건에 대해 별도 보고서 마련 중. 다만 건설업체 내 공유방법에 대한 평가방법 구체화 필요
	안전보건관리 성과관리	-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적으로 수반되는 내용으로 중복성 검토 필요

Step 2. 전문 건설업체 의견수렴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의 경우 사업주 교육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는 사업주의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 이하인 업체는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행사 참여의 경우 대·중·소 업체마다 횟수를 구별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예를 들어 대형은 매달 1회, 중형은 반기별 1회, 소형은 연 1회 이상 참여 증빙을 통해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경우 건설업체 내부 목표 및 이에 따른 규정 수립까지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을 어디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의 경우 건설업체 내 전담조직 유무로 평가에 반영이 가능하며, 규모에 따라 규모가 있는 업체(연매출 500억 이상)는 2인 이상, 미만은 1인에 대해 평가하는 수준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 조직의 적정성 및 역량의 경우 유자격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는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만을 평가하고, 안전관리자 정규직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의 경우 하도급을 통해 부여받는 안전관리비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집행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건설업체 내부의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 여부와 추가 지원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며, 증빙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사 안전보건 관리지원의 경우 점검비율(점검수/현장수)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점검수에 대한 증빙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의 경우 하도급 실적은 종합에 해당되므로 무의미하며, 공공은 의무 이행이기 때문에 민간 분야의 분리된 공종에 한해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적용 가능한 현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갈 것인지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관리의 경우 회사 내 내부 기준 수립 유무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예를 들어 6개월마다 비상 모의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고재해 조치 절차서 및 이행 결과 등을 매뉴얼로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으며, 회사의 경영방침 및 안전계획 수립과 연계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험 및 유해요인 제거 노력의 경우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위험성 평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어 해당 매뉴얼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및 안전보건관리 지원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는 설치조건부 자재납품에 대해서만 협력업체 적용되지만, 이와 관련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의 경우 TBM 일지를 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사업장마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의 경우 현장 내 관리자급 대상 및 교육 횟수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며, 교육 인증 여부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의 경우 전문 건설업체는 일부 공종에만 해당되며, 원가 부담이 발생하므로 현실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마. 시사점

전문건설업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볼 때 종합건설업체와 의견이 동일한 항목이 도출되었다. 평가항목에 구성되는 내용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증빙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를 평가에서는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고, 모든 것을 증빙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효성 여부와 함께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평가를 확인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도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당 평가 항목 중 전문 건설업체만의 특성을 가미한 평가 항목만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를 들어 기술지도비 적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수준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지원,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등은 전문 건설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평가 기준으로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7〉 Step 2. 전문 건설업체 의견수렴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전문건설업체 의견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 교육 방법 명확히 설정. 예) 일정규모 이상은 대면교육, 이하는 온라인 교육
	사업주 현장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 대·중·소 업체마다 횟수 평가 예) 대형 매달 1회, 중형 반기별 1회, 소형 연 1회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 구체적인 세부 매뉴얼 구성에 대한 지침 필요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	-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연매출 500억 이상은 2인 이상, 미만은 1인에 대해 평가 - 유자격 여부에 대한 증빙자료에 대한 기준 필요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 전문건설업체는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사업장만 평가하면 되며 안전관리자 정규직 여부에 대한 객관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	- 하도급을 통해 부여받는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 다만 건설업체 내부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예산 확보 및 추가 지원 여부 평가하는

		방법이 있으나 증빙 방법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필요
	본사 안전보건관리자 지원	- 현장수 대비 점검수로 점검 비율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구체적 증빙자료 마련 필요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 분리 공종된 발주와 민간공사에 한해서만 평가가 가능하며 구체적 평가 기준 검토 필요
안전보건 체계강화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관리	- 회사 내 내부기준을 매뉴얼로 구축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
	위험 및 유해 요인 제거 노력	- 위험성 평가 매뉴얼 구축 여부와 연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강화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	- TBM 일지를 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하지만 구체적 평가 기준 검토 필요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	- 협력업체 교육 지원을 자체 운영하는 것은 대형 건설업체에서도 시공능력 평가액 10위 이내만 가능. 현실적인 대안 검토 필요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 현장 내 관리자급 대상, 교육 횟수, 교육 인증 여부에 대한 객관성 확보 필요

Step 3.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수렴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는 2014년부터 대면 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전문 건설업체는 현재까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전보건공단이 주체하는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으로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안전행사 참여 여부의 경우 안전보건 간담회, 안전보건 활동 이행 확인, 현장 위험점검 행위 등 사업주 안전보건 활동 현황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대·중·소(전문 포함)별로 횟수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및 매뉴얼 작성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이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제출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용을 토대로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경영책임자 사고 보고 이행, 조치결과 확인은 실행 건수보다는 내부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이는 안전보건 경영방침 내용에 통합하여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8〉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 공단 의견	필요 여부
1) 사업주 안전 보건교육 이수	이수 횟수	- 교육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교육대상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 - 증빙자료 : 교육 이수증 - 평가방법 : 대형·중형(반기 1회), 소형(연 1회)	필요
2)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행사 참여	참여 횟수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참여 여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횟수를 대/중/소별 구분하여 평가 - 증빙자료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 평가방법 : 대형(연10회), 중형(연4회), 소형(연2회)	필요
3) 안전보건 경영방침 (정책/목표/규정) 수립 / 매뉴얼	문서 제출	- 증빙자료 : 안전보건경영방침 매뉴얼 - 평가방법 : 회사 내 안전관리 목표, 정책 및 주요 안전관리 수행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로 환산	필요
4) 경영책임자 사고 보고 이행, 조치결과 확인	문서 제출	- 안전보건 경영방침 매뉴얼과 통합	불 필요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에 대해서는 현장의 안전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대·중·소 규모별로 조직원 수 차등화를 두고 각 조직원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사 안전관리자 전담 임원 수, 팀원 자격 보유 현황은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인원 대비 정규직 비율의 경우 별도로 구성하지 않는 통합평가로 운영하되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및 근속연수에 따른 추가 가점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당해연도 준공 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기준의 경우 안전관리비 집행을 판단은 무의미하며, 객관적 평가 수행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수립 여부 또는 본사 차원의 별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편성 및 지원 기준으로 대체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이행 여부 실적은 사업주의 현장 안전점검과 중복되며, 이와 차별화된 별도의 안전점검에 대한 객관적 평가 수행도 한계가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실적의 경우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공단 내 K2B 시스템을 토대로 해당 업체의 사업장별 평가 등급이 우수한 지도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등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9〉 안전보건 활동 촉진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필요 여부
1)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	인원 수	- 평가대상 : 건설업체 안전전담 조직 구성 여부 - 평가방법 :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증명서 - 규모별 차등평가(예, 대형 임직원 5명 이상, 중형 임직원 3명 이상, 소형 임직원 1명 이상)	필요
2) 본사 안전보건 전담 인원수, 팀원 자격 보유현황	자격 수	-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규모와 통합 운영	불필요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인원 대비 정규직 비율	문서 제출	- 평가대상 : 대상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 평가방법 :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 관련 증빙자료 - 정규직 비율 평가(정규직 비율 70%, 60%, 50% 등 차등 점수 부여)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검토	필요
4)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집행 기준	문서 제출	- 평가방법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또는 본사 안전관리비 예산 수립 및 지원 증빙자료	필요
5)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이행실적	횟수	-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과 중복	불필요
6) 재해예방기술 지도 이행 실적	횟수	- 평가방법 : 사업장별 평가 등급 우수 지도기관과의 계약체결 비율	필요

다.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경영 지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 및 이행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대상 현장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내용이며,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도 중복되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고재해 발생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 마련 공유의 경우 건설업체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관련한 절차 및 내부 규정사항이며, 이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도 중복되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위험성 평가 절차 및 지침 마련 공유의 경우 위험성 평가 실시 및 지침 자체를 건설업체가 수립 및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로서 안전문화 정착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문서로써 평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10〉 안전보건 체계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 공단 의견	필요 여부
1) 안전보건 경영지침 이행을 위한 세부계획 정기적 수립	문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사항과 중복,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중복되므로 통합 운영	불필요
2) 사고재해 발생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 마련	문서 제출	- 중대재해처벌법 사항과 중복,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중복되므로 통합 운영	불필요
3) 위험성평가 절차 및 지침 마련	문서 제출	- 평가방법 : 위험성 평가 인증 보유 여부	필요

라.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반영의 경우 종합 건설업체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수준을 반영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건설업체의 협력업체 선정 시 사고사망만인율, KOSHA 인증 보유, 위험성평가 인증 보유 등에 대한 항목을 고려하는지 평가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협력업체 교육비 지원 현황의 경우 객관적 기준이 불명확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과도 연계되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현장 TBM 운영 체계 및 지침 마련 및 공유의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일상적 운영체계 및 지침을 갖고 있는 TBM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이행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 수행이 불가하며, 사업주의 경영평가 지침에서도 운영체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전담자 이외 관리자급 연간교육 계획수립 및 이행 실적의 경우 건설업체의 전사적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가 가능할 것이며,공단 내 교육 및 민간교육기관의 이수증 제출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의 경우 대형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중소형 건설업체는 비용 수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배점보다는 가점으로 전환하여 건설협회의 상호협력평가 내 해당 항목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11〉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 공단 의견	필요 여부
1)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반영	문서 제출	- 평가방법 : 현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문상에 안전수준 평가(사고사망만인율, kosha 인증, 위험성평가 인증 등) 반영 여부를 검토	필요
2) 협력업체 교육비 지원 현황	문서 제출	- 협력업체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객관적 기준 불명확	불필요
3) 현장 TBM 운영 체계 및 지침 마련	문서 제출	- 사업장마다 이행 여부를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 불명확하며 사업주 경영방침과 연계 가능	불필요
4) 안전보건 전담자 이외 관리자급 연간 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실적	교육 횟수	-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교육 기관 교육 이수증 제출 - 규모별 평가대상 및 교육 횟수에 대한 규정 필요	필요
일체형 작업 발판 사용 현장 비율	문서 제출	- 평가방법 : 건설협회 상호협력 평가와 연계 방안 검토	필요 (가점)

마.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연간 재해 원인 조사, 분석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공유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공사를 중지하고 이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 항목으로써 가성비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정기적 안전보건관리 목표 달성 수준 측정, 모니터링, 개선 체계 구축의 경우 안전보건 경영지침과 연계할 수 있으나, 해당 평가를 위한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하고 공단 내 이를 평가하기 위한 조직 구성 난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12〉 사후관리 및 개선 노력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평가 항목	평가 기준	산업안전보건 공단 의견	필요 여부
1) 연간 재해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공유	문서 제출	- 평가항목으로써 의미가 낮음	불필요
2) 안전보건관리 목표 달성 수준측정 및 개선 체계 구축	문서 제출	- 안전보건 경영지침과 중복 및 객관적 기준 불명확	불필요

Step 4. 건설업체(종합 및 전문) 의견수렴

Step 1 ~ Step 5까지의 과정을 걸쳐 정제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에 대한 종합의견을 다음과 같이 수렴하였다.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이수에서 대형 업체의 경우 횡수의 구분은 무의미하며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 책임자 중 한 명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수렴되었으며, 중·소형 업체의 경우 교육 횡수는 의미 없으나 교육 대상은 사업주로 한정하자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교육 주체인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대·중·소 업체의 사업주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주의 현장 안전보건점검 및 행사 참여의 경우 대형은 월 1회 수준(연 10회), 중형 및 소형은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극소수지만 소형의 경우 사업이 없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의 경우 안전보건 경영지침 수립 매뉴얼은 안전 의식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위해 수립 매뉴얼에서 평가하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며, 대형 업체의 경우 KOSHA 인증을 받은 업체는 실적평가지표의 평가 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당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13〉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건설업체 종합의견

평가 항목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건설업체 의견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주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 교육대상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 - 증빙자료 : 교육 이수증 - 평가 방법 : 대·중형(반기 1회), 소형(연 1회) 	(대형업체) 횡수 구분 의미없음. 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중·소형업체) 횡수 구분 의미없음. 사업주로 한정 공단이 대·중·소 구별 교육
2)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 점검, 안전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참여 여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횡수를 대/중/소별 구분하여 평가 - 증빙자료 : 사업주 안전·보건 활동 결과보고서 - 평가방법 : 대형(연 10회), 중형(연 4회), 소형(연 2회) 	(대형업체) 월 1회(연 10회 수준) (중·소형업체) 중형 분기(연 4회 수준), 소형 반기(연 2회 수준) 단, 사업 없는 업체 배점 제외
3) 안전보건 경영방침(정책/목표/규정)수립/매뉴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빙자료 :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 평가방법 : 회사 내 안전관리 목표, 정책 및 주요 안전관리 수행 지침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점수로 환산 	(대·중·소형업체) KOSHA 인증과 연계 안전보건경영방침 매뉴얼 상 주요 평가 요소 구체화 필요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규모에서 대형 업체의 경우 안전 조직 인원이 많기 때문에 현행과 같이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만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적절하며, KOSHA 인증 업체는 DB 연계하여 평가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중·소형 업체의 경우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해

당 기술자의 재직증명서 및 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등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선임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서 대형 업체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근속연수는 대부분 길기 때문에 가점 반영에 긍정적이나, 중·소형 업체의 경우 인력의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근속연수 평가 방법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 도출되었다. 반면, 건설협회에서는 고용 안전성 및 안전관리 체계 연속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근속연수에 대한 가점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근속 연수 2년 이상 비율이 전체 안전관리자 대비 50% 이상일 경우 가점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에서 대형 업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외 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사용항목별 증빙은 어려운 상황으로 조사되었으며, 소형 업체의 경우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비를 평가하는 것은 객관성이 결여되며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사의 현장 안전점검 이행 실적에서 대형 업체의 경우 사업주와 본사 차원의 안전점검이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어 각각 분리하여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반면, 중·소형 업체의 경우 평균 본사 직원이 5명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평가 지표가 사업주와 본사로 분리되면 인력 부족의 한계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실적의 경우 K2B 시스템으로 평가가 가능하며, 전체 현장 대비 불량 현장 수 기준 10~20% 수준으로 평가 기준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II-14〉 안전보건 활동 촉진 건설업체 종합의견

평가 항목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건설업체 의견
1) 본사 안전 조직 규모	- 평가대상 : 건설업체 안전전담 조직 구성 여부 - 평가방법 : 조직도 및 명단, 재직	(대형업체) KOSHA 인증과 연계 (중소형업체)

	<p>증명서, 기술인협회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모별 차등평가(예, 대형 임직원 5명 이상, 중임직원 3명 이상, 소형 임직원 1명 이상) 	<p>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p>
<p>2) 선임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대상 현장 안전보건관리자 - 평가방법 :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자격관련 증빙자료 - 정규직 비율 평가(정규직 비율 70%, 60%, 50% 등 차등 점수 부여) -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가점 부여 방안 검토 	<p>(대형업체) 근속연수 가점제 필요</p> <p>(중소형업체) 안전관리자 수급 불안정 때문에 근속연수 가점제 불필요</p> <p>(건설협회) 근속연수 2년 이상자 전체 50%이상 시 가점 필요</p>
<p>3)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집행 수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협력업체 안전관리비 계상 기준 또는 본사 안전관리비 예산 수립 및 지원 증빙자료 	<p>(대형업체) 안전관리비 관련 별도 예산 투여하고 있으나 사용항목별 증빙 자체는 어려운 실정</p> <p>(중소형업체) 협력업체에게 안전관리비를 배분하는 것에 대한 증빙 자체 어려운 실정</p>
<p>4) 본사 안전점검 이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과 중복 	<p>(대형업체) 사업주와 본사 이원화 점검 가능하므로 개별 반영</p> <p>(중소형업체) 본사직원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이원화 평가 불가능</p>
<p>5)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사업장별 평가 등급 우수 지도기관과의 계약체결 비율 	<p>(중소형업체) K2B와 연계하여 기술지도기관 평가에 의해 전체 현장수 대비 불량 평가를 집계</p>

다. 안전보건 체계 강화

안전보건 경영지침 세부계획 수립 이행여부 및 사고재해 발생 시 대응 조치 절차 및 규정 마련의 경우 사업주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매뉴얼 구축 항목과 통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지침 마련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업체는 모두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출되는 증빙자료가 형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닌 업체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취지라면 별도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라. 안전 문화확산 및 역량강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반영에서 중·대형 건설업체는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 관련 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대외비성 자료이기 때문에 점수 공개 증빙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협력업체 선정 기준 매뉴얼 공개 범위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소형 업체의 경우 안전 관련 평가 기준이 고려되고 있으나 구체적 산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협력업체 교육비 지원 현황 및 현장 TBM 운영체계 및 지침 마련 공유와 관련해서는 공단의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안전보건 전담자 이외 관리자급 연간 교육 계획 및 이행실적에서 대형 건설업체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반기별로 안전과 관련한 내부 집체교육을 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에 대한 인정 여부와 함께 모든 사업자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현장당 1명 이상으로 할 것인지 등 또한 교육 주체(공단, 민간교육기관 등)에 대한 정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의 경우 공공과 민간, 대형 및 중·소형 간

형평성이 크기 때문에 배점보다는 가점 운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Ⅲ-15〉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건설업체 종합의견

평가 항목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	건설업체 의견
1)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반영	- 평가방법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상에 안전수준 평가(사고사망만인율, kosha 인증, 위험성 평가 인증 등) 반영 여부를 검토	(중·대형 업체) 입찰공고문 또는 협력업체 선정 내부 운영기준을 평가(소형업체) 협력업체 선정 시 고려되어 있으나 증빙하기 어려운 실정
2) 안전보건 전담자 이외의 관리자급 연간 교육계획 및 이행실적	-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민간 교육기관 교육 이수증 제출 - 규모별 평가 대상 및 교육 횟수에 대한 규정 필요	(대·중·소형 업체) 교육주체 인증 범위 및 교육대상 범위, 내부 집체교육 인증 여부 등을 명확히 설정 필요
3) 일체형 작업발판 적용 비율	- 평가방법 : 건설협회 상호협력 평가와 연계 방안 검토	(대·중·소형 업체) 공공 및 민간, 대형 및 소형간 형평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점으로 전환

이외 사후관리 개선 노력에서의 연간재해 원인조사 분석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수립, 안전보건관리 목표 달성 수준 측정 및 개선 체계 구축 등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수렴되었다.

단, 가점 항목으로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및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적용 현장 비율, KOSHA 인증 외 타 인증도 함께 반영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아울러, 추가 안전으로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안전 활동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에서와 같이 건설업체가 해당 건설공사 중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이에 발주자가 승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Step 5. 종합건설업체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최종의견수렴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는 선제적 예방 활동의 목적을 완수함과 동시에 평가 관련 데이터의 수집 용이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표적집단면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최종의견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및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행사 참여’ 항목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며, FGI에서 최종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교육 대상은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책임자 중 안전보건교육 과정을 대면교육으로 이수 시 교육 이수증 제출로 평가한다. 여기서 건설업체는 대면교육 한정에 동의하며, 교육대상에 대한 범위를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경영책임자

중 하나로 인정할 경우 대형 건설업체들은 유리한 조건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반면, 공단의 경우 책임자를 단일화해야 하며, 의사결정권자를 사업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대신 대형 건설사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대형 건설사 리더 회의에 사업주가 참석하는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안이 제시되었다.

〈표 III-16〉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 책임자 - 평가방법 :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과정 이수 - 평가자료 : 교육 이수 전산 DB 활용 - 대형 건설사 리더 회의에 사업주 참석 시 해당 교육 이수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을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 책임자 중 하나로 평가하면 대형 건설업체일수록 유리 - 대면교육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항목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 대상은 사업주로 한정

2)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행사 참여

사업주가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안전행사에 참여한 활동을 결과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평가방법으로 1안은 사업주 현장안전보건 활동 참여한 결과를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시 참여시 만점을 주고, 10회 미만 시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이며, 2안은 대중소 업체 규모마다 대형은 총 10회, 중형은 총 4회, 소형은 총 2회로 만점 차등을 주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 건설사의 경우 10회 이상에 대해 큰 의견이 없으나, 중소형 건설업체 특히 현장 수가 적은 업체일수록 10회 이상을 채우는 것

은 동일 현장을 월마다 참여하는 한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수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반면, 공단의 경우 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노력을 평가에 따라 차등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건설 현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만 구분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수와 관계없이 10회 이상에 만점을 부여하고,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배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건설업체 및 공단의 종합의견을 수렴한 결과 평가대상은 사업주로 하며, 현장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 수에 관계없이 10회 이상을 만점 기준으로 하고, 미만 시 점수 차등 부여 방안을 모색하며,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서를 전산으로 제출받아 이를 통해 평가하는 방안으로 최종 제시되었다.

〈표 III-17〉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행사 참여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 점검 및 안전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경영 책임자 - 평가방법 : 1안)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시 만점, 미만 점수 차등 2안) 대형(연 10회), 중형(연 4회), 소형(연 2회) 만점, 미만 점수 차등 - 평가자료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및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양식 존재하나 소형업체의 경우, 작성 방법이 어려워 구체적 설명 언급 필요 - 업체 현장 수 기준으로 10개 이상(10회), 10개 미만(4회), 2개 미만(2회), 현장 없는 업체 배점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의 산재예방을 위한 사전 노력을 평가하는 취지이므로 업체 규모에 따른 평가 횟수 차등은 불합리 - 건설현장 보유 업체 연 10회 만점 -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 배점 배제

3)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해당 건설회사의 자발적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 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지표로서 내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에 대한 내용, 둘째, 사업주 사고보고 및 조치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셋째,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조직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넷째,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객관적 평가지표 매뉴얼을 별첨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는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의 계획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도 평가해야 하므로 평가 체크리스트에 이행 결과 보고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위해 제출 서류 시점과 이행결과 시점을 동일연도 또는 직전년도 여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안전보건 공단의 경우에서도 안전보건경영방침 뿐만 아니라 이행 실적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만, 현재 경영방침 내용을 체크리스트에 준하여 평가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 평가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에 한계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의견수렴 결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크리스트를 별첨으로 제공하면 건설업체는 평가 체크리스트의 내용을 토대로 자사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자유 양식으로 작성하여 전산으로 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은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체크한 수에 따라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으로 최종 제시되었다. 단, 현행은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에 대한 체크 여부만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차년도부터는 작년 경영방침에 대한 이행실적 여부와 새롭게 구성된 경영방침 항목이 있는지 추가하는 방

안이 검토되었다.

〈표 Ⅲ-18〉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해당 건설업체 - 평가방법 : 안전보건경영방침 체크리스트 결과표에 따라 평가 - 평가자료 : 안전보건경영방침 보고서 전산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방침에 대한 계획 및 이행결과 모두 평가 필요. 단, 제출 서류 시점과 이행결과 시점을 동일 연도로 할 것인지 이행결과는 직전 연도로 할 것인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연간 이행 실적 까지 평가 반영 필요 - 단, 기 평가인력의 업무 한계 고려 필요 - 현 수준에서는 평가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평가 내용 확인 수준으로 평가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활동 촉진은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및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 항목으로 구분하고 평가하며, FGI에서 최종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사 안전보건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은 현행 기준을 준용하며, 평가와 관련된 자료(조직도, 업무분장표, 재직증명서, 기술인협회 증명서 등)를 전산으로 제출하면 평가하는 방안을 기본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형 건설업체는 시평액 순위보다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³⁾의 등급별로 구분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며, 이 경우 5등급 이하 업체는 임직원 수와 유자격자를 포함할 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등급 이하에서는 겸직 관리자를 0.5배 인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현행 시평액 순위보다는 실제 공공 건설공사 입찰제도 참여 기준인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급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평액 순위를 감안한 등급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산재예방을 위한 조직구성에 있어 겸직 관리자를 배치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실제 보건 활동 여부를 하는 조직인지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었다.

종합의견수렴 결과 현행 시평액 기준을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차별화하고, 시평액 순위와 유사한 구조의 등급별 참여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겸직 관리자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3) 2024년도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 ; 시평액을 토대로 총 7개의 등급으로 구분되며, 순위 외에는 등급외로 규정 1등급 77개 (시평액 순위 77위까지), 2등급 115개(시평액 순위 78위~192위), 3등급 152개(시평액 순위 193위~344위), 4등급 305개(시평액 순위 345위~649위), 5등급 537개(시평액 순위 650위~1186위), 6등급 734개(1187위~1920위), 7등급 539개(시평액 순위 1921위~2459위)

〈표 III-19〉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본사 안전 관련 조직 - 평가방법 : 시평액 기준 1~20위 이내 : 인원계산식 산정(현행유지) 21위~200위 : 임직원 4명(유자격자 2명 포함)시 만점 201~500위 : 임직원 3명(유자격자 1명 포함)시 만점 501위~1,000위 : 임직원 2명(유자격자 1명포함)시 만점 1,000위 이상 : 임직원 1명(유자격자 포함)시 만점 - 평가자료 : 조직도, 재직증명서, 업무분장표, 기술인협회 발급 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평액 순위보다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 준용 - 5등급 이하에서는 임직원수 및 유자격자 포함 시 업계 부담 발생, 5등급 이하에서는 겸직 허용 여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평액 순위보다는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개정 필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직구성은 전문성이 있어야 하므로 겸직 평가는 형평성에 맞지 않음.

2)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현장 내에 선임된 안전 및 보건관리자에 대한 정규직 비율을 평가하는 것으로 현행 기준(정규직 비율 70% 이상 시 만점)을 준용하되, 고용노동부 DB와 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평가 DB간 연계를 통해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기본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로 대체하는 방안에 동의하나,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배점에서 제외하는 방안

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보건관리자 대상 현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주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종합의견수립 결과,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현장은 고용노동부에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서식을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기존 서식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 여부 기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안전보건공단의 전산화 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보건관리자의 위상과 본연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와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도 검토되었다.

〈표 III-20〉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안전보건 관리자 정규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법령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 - 평가방법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정규직 비율 70% 이상인 경우 만점 그 이하 차등 감점 - 평가자료 : 고용노동부 전담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제출로 대체 방안 동의 단, 현장 없는 경우 배점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구분하여 각각 평가 필요 -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채용을 향상시켜 주체적인 보건관리자 업무수행 유도 필요 - 해당 현장 없는 경우, 배점에서 제외하고 상위 항목에서 배점 조정

3)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재해예방 기술 지도는 대상 현장에 있어 1안) 지도사항 미이행 시 발주처

통보 횡수당 감점 처리하는 방안, 2안) 전체 현장 수 대비 S 또는 A 등급의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과 계약한 비율을 고려하여 평가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기본안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경우 현재 민간 공사도 발주자의 권한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S, A등급) 계약 비율을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지도사항 미이행 시 발주처 통보 횡수당 감점 처리 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법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도 내용에 대해 미이행 시 그 사실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이 경우 K2B와 연계하면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한 종합의견수렴 결과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대상 현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K2B와 연계하여 지도사항 미이행 시 발주처 통보 횡수당 감점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으며, 대상 현장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고 상위 분류에서 배점 기준을 구별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표 Ⅲ-21〉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법령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 - 평가방법 : 1안) 지도사항 미이행 시 발주처 통보 횡수당 감점 없는 경우 만점. 그 이하 차등 감점 2안) 전체 현장수 대비 재해예방기술 지도기관(S,A등급) 업체와 계약한 비율 - 평가자료 : 안전보건 공단 K2B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사항 미이행 시 배점 처리에 동의,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 S,A 등급은 발주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적절 - 대상 현장 없는 경우 배점 제외, 상위항목에서 배점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B 연계를 통해 기술지도 미이행 사항 횡수로 평가 동의

다.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및 ‘관리자급 안전교육실적’ 항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FGI에서 최종 도출된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종합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여 건설업체별 협력업체 선정 시 전문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는지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력업체 선정 시 전문 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계획 수립, 안전 관련 인증 보유 업체 우대 등을 고려하는지 입찰 참가공고문 또는 내부 평가 기준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안을 기본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경우 최소 3등급 이상이 되어야만 협력업체 모집 공고가 가능하며, 그 이하 업체의 경우 종합 건설업체보다 협력업체가 시평액이 더 높거나 오히려 종합건설업체가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협력업체 평가 지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경우 건설업체의 의견에 동의하며,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3등급까지만 고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의견수렴 결과, 실태조사를 통해 종합건설업체의 몇 등급까지 가능한지를 분석한 후, 대상 등급 업체만 배점에 고려하며 그 외의 업체는 배점에서 배제하고 상위 기준에서 배점 조정하는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표 III-22〉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종합건설업체 - 평가방법 : 건설업체별 협력업체 선정 기준 내 안전관리 수준평가 (사망만인율,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여부, 안전 관련 인증 보유 가점 등) 여부 존재 시 만점 - 평가자료 : 입찰공고문 또는 내부 협력업체 선정기준 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자격자명부 기준 3등급 이내만 가능 - 4등급 이하부터는 현실적으로 협력업체 수급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계 의견 동의. 해당 평가항목 적용 여부는 유자격자 등급 고려 필요

2)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

본사 및 법령에서 정한 대상 현장(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 현장)을 기준으로, 본사 안전조직 및 사업장별 현장 소장, 현장관리자(단, 안전관리자 및 행정지원 등 제외) 등을 대상으로 대상자 대비 교육 이수 횟수를 비율 산식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안전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리자급 안전교육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 보건교육기관 및 직무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관리자급 안전교육을 중심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체는 안전교육 범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작업 주의 교육을 제외한 상황에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려면 관리자급이 이수해야 할 교육 시간이 많아지므로 안전교육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또한 본사의 경우 본사의 관리자급 교육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본사관리자에 대한 정의도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실시되었으며, 안전교육을 대면 교육으로 인정한다면 교육기관에서 관리자급 인원을 모두 수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안전보건공단의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기본적인 안전보건교육 이외 추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평가에 고려하는 것이므로 최소한의 노력도를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판단되며, 다만 해당 항목의 세부기준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의견수렴 결과 관리자급 안전보건 교육은 본사 안전관리 조직 및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및 현장 관리자로 하고, 교육기관 인정 범위에 한해 교육 이수한 관리자 또는 횡수를 유자격자 등급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표 III-23〉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관리자급 안전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본사 관리자 및 법령에서 정한 건설현장 소장 및 관리자 - 교육기관 인정범위 : 안전보건공단 관리자급 안전교육 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안전보건 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근로자 교육기관 194개소, 직무교육기관 34개소) - 평가방법 : 관리자 교육 횡수 대비 평가대상자 백분율 100% 이상 시 만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교육 대상의 경우, 본사관리자에 대한 기준 불명확 특히 초대형 건설회사일 경우 대상자 불명확 - 교육기관 인정범위의 경우, 자체 보수교육 등 인정 범위 확대 필요 - 대면 교육으로 한정할 경우, 교육기관 수용 여부 한계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업체 관리자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인 안전보건 교육 이외 추가 노력 여부를 판단하는 취지로서 해당 항목 평가 합리적 - 다만, 평가 항목을 간단명료하면서 명확하게 설정 필요 예) 본사 및 현장 구분없이 관리자급 안전교육 이수횡수

라. 가점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 항목마다 2~3점 범위 내 배점을 주고 총합 5점을 초과하는 경우 5점만 부여하는 기본안을 제시하였다.

〈표 III-24〉 가점 항목 최종의견

평가 항목	기존 평가(안)	건설업체 의견	안전보건공단 의견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받아 유지중인 업체	- 이견 없음	- 현행 유지
안전보건 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업체 - 평가자료 : 수상 증빙자료	- 이견 없음	- 이견 없음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활용수준	- 평가대상 : 스마트 건설안전 기술 적용 사업장 - 평가방법 : 공단 및 타 기관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된 스마트 안전 장비 적용 유무 - 평가자료 : 안전보건공단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실적표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현장은 극히 제한적	- 대형업체의 경우 KOSHA 인증 가점 기회가 부여되는 점을 고려하여 반영 필요 - 일관성 확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실적 반영 전환

<p>시스템 비계 사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민간공사에서 시스템 비계 적용사업장 - 평가방법 :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사용현장비율 - 평가자료 : 건설협회 상호협력평가 중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협회는 2월에 실적신고 받아 7월 중순 평가가 종료되기 때문에 8월 이후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연도 실적을 차년도에 반영하는 구조로 반영
<p>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산안법 제71조에 따른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 평가방법 : 해당 사업장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진 실적 - 평가자료 :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의 협조가 아니면 불가능한 사안이라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견 없음

3.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개선(안)

5단계의 표적집단면접을 반복 실시하여 평가의 목적에 부합하고 현실성, 효율성, 신뢰성 등을 종합 검증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III-2에서와 같이 대분류 기준 3개의 배점항목과 1개의 가점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평가 항목으로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3개, 안전보건 활동 촉진 4개,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개 등 총 9개의 평가 항목을 구성하였으며, 가점 항목으로 5개의 세부평가 항목을 구성하였다.

2023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			종합 검토 의견			2024년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	
상위항목	하위항목	세부항목	구분	개정(안) 반영 유무	항목 재편 및 미반영 사유	상위항목	하위항목
사업주 안전인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실적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기준	○		사업주 안전인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안전보건 경영상태 및 목표 수립(문서화)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기준	○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문서화)	사업주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확인, 안전보건 계획 수립, 사고 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내용 포함	신규	○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문서화) (목표, 경영방침, 사업주 사고보고 및 대응 절차, 조직 주안 안전점검 계획 및 대응 절차, 위험성평가 절차,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계획 및 결과, 차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계획)
	사업주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확인	신규	△	1-3 항목에 내용 편입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조직 수준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	기준	○ (항목 통합)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본사 안전보건 전담팀 구성 및 인원 / 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역량)
	안전·보건 관리자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기준	○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장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기준	○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신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수준	신규	X	객관적 평가 수행 불가, 신안비 기본 개념 혼란 우려			
안전보건 체계 강화	본사 안전보건 관리 지원 (본사 현장 안전점검)	신규	△	1-3 항목에 내용 편입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법령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신규	○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안전보건 계획 수립 및 관리	신규	△	1-3 항목에 내용 편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사고 재해 조치 매뉴얼 마련	신규	△	1-3 항목에 내용 편입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위험 및 유해 요인 제거 노력	신규	△	1-3 항목에 내용 편입		가점 항목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동 실적
	안전 문화 확산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신규	○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안전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관련 지원	신규	X	객관적 평가 수행 불가		법령에 따른 치구의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신설)
	안전역량 강화	안전보건관리 공유체계	신규	X	객관적 평가 수행 불가		
사후 관리 및 개선 노력	사고·재해 재발 방지 노력 (조시, 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관리자급 교육 실적	신규	○		가점 항목	
	안전보건 관리 성과 관리 (측정, 모니터링, 개선)	일체형 작업발판사용 실적	신규	○ (가점 반영)	소형, 전문의 경우 평가에 부당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점 반영 요건 기 실시중인 사항, 평가항목으로 구성비 낮음		
가점 항목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신규	X	객관적 평가 수행 불가, 원 평가업무 세계 및 일차성 불가능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신규	X	객관적 평가 수행 불가, 원 평가업무 세계 및 일차성 불가능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신규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지원사업으로 가점항목 확대			

[그림 III-2]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지표 개선(안)

1)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사업주 현장 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에 대한 산정 기준은 다음 표 Ⅲ-25와 같다.

〈표 Ⅲ-25〉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안)

평가 항목	산정 기준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대상 : 사업주 - 평가방법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대면교육 이수 여부 평가(온라인 교육 제외)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평가방법 : 교육 수료증 (연 1회) 제출 																										
사업주 현장 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사업주 - 평가방법 : 사업주 현장 안전, 보건 활동 참여한 내용(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등) : 평가기간 내(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1일~12월31일) 10회 이상 참여 시 해당 항목 만점(월 최대 1회 인정) : 10회 미만은 횟수마다 10%씩 차등 감점 - 평가자료 : [부록 1]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해당 업체 - 평가방법 : 안전보건 경영방침 계획 수립 및 실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항목</th> <th style="text-align: center;">평가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td> <td></td> </tr> <tr> <td>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록 2]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에 따른 배점화 (12개 평가항목 모두 체크 시 배점 만점, 1개 미체크 마다 10%씩 감점)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2)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보건 조직 수준,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중·소형 및 전문만 해당)에 대한 산정 기준은 다음 표 III-26과 같다.

〈표 III-26〉 안전보건 활동 촉진(안)

평가 항목	산정 기준
안전보건 조직 수준 (본사 전담팀 구성 및 인원) 적정성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급별 기준 - 평가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평액 1위~20위 (인원 계산식 참조) 1~2등급 업체 : 임직원 4명(유자격 2명) 만점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3~4등급 업체 :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5등급 업체 :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6등급 이하 업체 :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 70% - 평가자료 :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 본사 조직별 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선임 현장 - 평가방법 : $[\text{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수} \div \text{대상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 단, 정규직 안전관리자는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 정규직 비율 70% 이상 경우 만점 정규직 비율 6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20% 차감 정규직 비율 5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40% 차감 정규직 비율 4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60% 차감

	<p>정규직 비율 40% 미만인 경우 만점 대비 80% 차감</p> <p>- 평가자료 : [부록 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p>
<p>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p>	<p>- 평가대상 : 법령에서 정한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p> <p>- 평가방법 :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수 ÷ 대상 보건관리자 수] × 100%</p> <p>단, 정규직 보건관리자는 근속연수 6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인정</p> <p>정규직 비율 70% 이상 경우 만점</p> <p>정규직 비율 6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20% 차감</p> <p>정규직 비율 5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40% 차감</p> <p>정규직 비율 40% 이상 경우 만점 대비 60% 차감</p> <p>정규직 비율 40% 미만인 경우 만점 대비 80% 차감</p> <p>- 평가자료 : [부록 3]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p>
<p>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중소형 및 전문업체만 해당)</p>	<p>- 평가대상 : 법령에서 정한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 대상 사업장</p> <p>- 평가방법 : 지도사항 미이행 여부에 따른 발주처 통보 횟수</p> <p>(단, 이전 지도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발주처 통보 횟수 없는 경우 만점)</p> <p>: 미이행 횟수 1회당 만점 대비 20% 차감</p> <p>: 총 5회 이상 미이행 시 0점 처리</p> <p>- 평가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전산 연계를 통한 건설업체별 지도사항 불이행 횟수 반영</p>

안전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안전관리자 선임보고서를 별지 서식으로 선 제출하게 되어 있으며, 여기에 해당 안전·보건관리자의 근속연수와 정규직 여부를 체크하여 고용노동부 선임 안전·보건 관리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면 이를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자동 집계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이 해당 평가 항목을 산출할 수 있다.

〈표 Ⅲ-27〉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안)

평가 항목	산정 기준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종합 건설업체 - 평가방법 : 건설업체별 협력업체 선정 기준 내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여부 존재 시 만점, 미존재 시 0점 - 평가자료 : 협력업체 입찰공고문 또는 내부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토대로 협력업체의 사망만인율,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 계획 수립, 안전 관련 인증제 보유한 업체를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관리자급 안전교육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사업장별 현장소장, 현장 관리자, 본사 관리자 (단, 안전관리자, 행정지원 등은 제외) - 평가방법 :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단, 산안법 및 타 법령에 정한 법적 교육 이수 기준 제외 예시) 산안법 제31조(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기타 재해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안전 교육 및 자체 보수교육 제외 - 1등급 업체 : 안전보건교육 1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2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7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3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5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4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3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5등급 이하 : 안전보건 교육 1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단, 만점 기준으로 교육 이수 10% 미달 시마다 만점 대비 20% 차감 - 평가자료 : 교육이수증(수료증) 전산 입력

4)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승인 등으로 구분하였으며, 총 5점의 가점

으로 하여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다음 Ⅲ-28과 같다.

〈표 Ⅲ-28〉 가점 항목(안)

평가 항목	산정 기준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당해연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받아 유지중인 업체 - 평가방법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중인 경우 만점 안전보건공단에 인증 신청하여 인증심사 진행되는 경우 만점 대비 70% 반영 - 평가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DB 연계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 실적 - 평가방법 : 수상 관련 증명서 제출 여부로 가점 부여
산업안전보건 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대상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실적 유무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 평가자료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민간공사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 현장 비율이 일정 비율 넘는 경우 가점 부여 - 평가자료 : 대한건설협회 상호협력평가 DB와 연계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 평가자료 : 해당 사업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

**IV.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실태조사**



IV.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실태조사

1. 실태조사 개요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건설업체 규모별, 업체별 특성을 가미하고 평가 체계의 객관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작동 체계를 마련하는데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에 대해 다양한 실무 및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토대로 건설업체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첫째, 대분류 기준별 배점 비중, 둘째, 해당 업체의 산재예방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 셋째, 해당 업체입장에서 산재예방 개선(안)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한 의견수렴, 넷째, 가점 항목에 대한 배점 분포 및 해당 업체 입장의 의견수렴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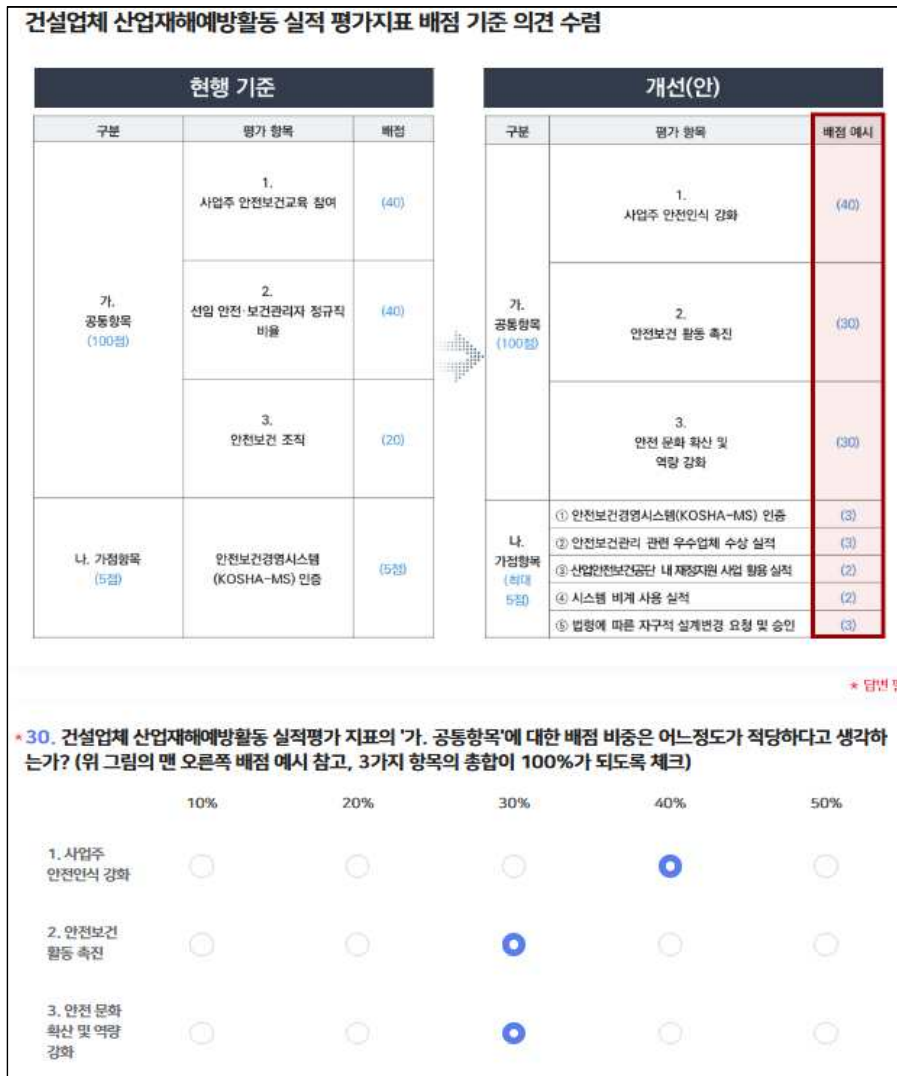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의 협조를 받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표 IV-1〉 실태조사 개요

구분	실태조사 내용
실태조사 대상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시기	2024년 9월 중 ~ 10월 말
실태조사 내용	1. 대분류 기준별 배점 비중 2. 산재예방 개선(안)에 대한 긍정적 의견 3. 산재예방 개선(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 4. 가점 항목에 대한 배점 분포 및 의견
총 회수	88부 1등급(4), 2등급(6), 3등급(5), 4등급(10), 5등급(13) 6등급(18), 7등급(11), 등급 외(21)

1) 배점 분포 비중

대분류 기준(사업주 안전인식 강화, 안전보건 활동 촉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에서의 배점 비중을 조사하여 실제 업체들이 바라본 분류 기준별 중요도를 파악하였다.



[그림 IV-1] 대분류 기준 배점 비중 예시

2)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 개선(안) 배점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세부평가 항목별 산정 기준에 대해 해당 업체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정도를 5점 척도(1점 매우 부정적, 5점 매우 긍정적)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부정적 의견(1점 및 2점)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p>2. 안전보건 활동 촉진</p> <p>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방법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20위 입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계산시 참조 15점 - 인원 전담조직(임원포함) 있으면 5점 ○ 1,2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일 4명 이상(유자격 2명 포함) 15점 - 일·직일 3명 이상(유자격 2명 포함) 10점 - 인원 전담조직 있으면 5점 ○ 3,4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일 3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20점 - 일·직일 2명 이상 10점 ○ 5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일 2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20점 - 일·직일 1명 이상 10점 ○ 6등급 이하 업체 (6, 7등급 및 등급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직일 1명 이상(유자격) 20점 - 일·직일 1명 이상 10점 평가 자료 : 1. [별지 4]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2.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3. 본사 전담자별 기술인력회 경력증명서
	<p>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p>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p>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 답변 필

*** 12.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3. 12번에서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유자격자를 본사에 배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임.

[그림 IV-2] 세부 평가 항목별 의견수렴 예시

3) 가점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5개 가점 항목 개선(안)에 대한 해당 업체의 점수 확보할 수 있는 정도와 각 항목별 배점 부여 비중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나. 가점항목 (가점의 총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점만 부여)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현행 유지) <small>(이 항목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부여의 의미를 증가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광역연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적용 받아 유지중인 업체 평가 방법 :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 중인 경우 5점 ○ 안전보건분야에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KOSHA-MS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광역연도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업체 평가 방법 : 안전보건 관련 수상 실적 유무 평가 자료 : 통찰형 (안전보건 관련 수상 실적) 또는 기타 증명자료 (호칭 및 사본 증명자료 또는 관련 단체의 실 적인 경우)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평가 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 실적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사망 총 고위험 개선 ② 후회방지 안전시설 (간접업) ③ 스키마 안전장비 지원사업 ④ 산업단지 안전재정사업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④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small>(이 항목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부여의 의미를 증가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민간공사에서 시스템 비계 적용 사업장 평가 방법 :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 비율 =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수) ÷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상 : 2점 - 65% 이상 ~ 80% 미만 : 1.5점 - 50% 이상 ~ 65% 미만 : 1점 - 35% 이상 ~ 50% 미만 : 0.5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국민안전처의 상호협력평가 항목 중 실적형 적용된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설계변경요청)에 따라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사업장 설계변경을 요청 및 승인 이후에 착공 실적 유무 평가 방법 : 사업체에서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사업장 설계변경을 요청 및 승인 이후에 착공 실적 유무 평가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단점

* 25.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6.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7.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8.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④ 시스템비계 사용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9.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그림 IV-3] 가점 항목에 대한 의견수렴 예시

2. 실태조사 결과

1) 배점 비중 실태조사 결과

산업재해예방평가 지표의 대분류 항목은 ‘1.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2. 안전보건활동 촉진’, ‘3.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로 구분되며, 각 항목별 배점 비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전체평균 비중으로 볼 때,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가 40%, 안전보건활동 촉진 32%,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9%를 점유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분포도에 있어서도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는 배점 비중이 높은 부분에 많이 선택되었고,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는 중간 부분에 많이 선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 대분류 기준별 배점 비중 결과

구분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활동 촉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전체 평균		40%	32%	29%
분포	50%	20	2	4
	40%	49	21	11
	30%	15	59	46
	20%	3	5	26
	10%	1	1	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전체 배점 100점을 기준으로 ‘1.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는 40~50%, ‘2. 안전보건활동 촉진’은 30~40% 범위, ‘3.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30% 범위에서 배점 비중을 고려할 수 있다.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를 40점, 안전보건활동 촉진 40점,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를 20점으로 배점 비중을 가정⁴⁾할 경우, 4가지 안의 세부 구성

4) 안전보건활동 촉진은 4개의 세부항목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는 2개의 세부항목

항목 배점 비중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먼저 1안은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안은 소규모 사업장이 없어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이 없는 경우, 3안은 선임 안전관리자 대상 현장은 존재하나 보건관리자 대상 현장은 없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4안은 현장수가 적고 선임 안전 및 보건관리자 현장이 없으며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 5안은 현시점에서 건설현장이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한 경우의 예시로 볼 수 있다.

이 예시에서와 같이 대분류 기준에서 설정한 배점 기준 범위 내에서 여러 대안에 따라 배점을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고려할 수 있다.

〈표 IV-3〉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지표 배점 분포(안)

대분류	세부항목	1안	2안	3안	4안	5안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40점)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10	10	10	20	20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10	10	10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20	20	20	20	20
안전보건 활동 촉진 (40점)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10	20	20	20	40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10	10	10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10	10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	10		10	20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점)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10	10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10	10	20	20	20

을 갖고 있어 세부항목의 배점을 고려할 경우 안전의식 강화 40점, 안전보건활동 40점, 안전문화 역량 강화 20점의 가정이 가장 합리적임.

2)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실태조사 결과

가.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실적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의 안전보건 교육이수 실적 개선(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는 3.84로 점수 확보에 강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4.75	
2등급	6	4.83	
3등급	5	4.60	
4등급	10	4.70	
5등급	13	3.77	1
6등급	18	3.61	3
7등급	11	3.36	3
등급 외	21	3.29	3
총계	88 (100%)	3.84	10 (11.36%)

또한 전체 응답자의 11.36%가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그 이유는 사업주의 성향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사업자의 안전의식 부족은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이므로 부정적 의견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5〉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5등급	대표자 성향
6등급	사업자가 연세가 많으심, 건설현장 미보유
7등급	대표님 대면교육 이수 어려움, 매우 바쁨, 사업주 일정 어려움
등급 외	대표자 성향, 인력 부족, 신청하면 늦음

나.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실태조사 결과

사업주의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개선(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는 3.58로 약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등급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7등급 및 등급외의 경우 부정적 견해가 타 등급에 비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6〉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4.50	
2등급	6	4.17	
3등급	5	4.80	
4등급	10	4.10	1
5등급	13	3.23	2
6등급	18	3.61	2
7등급	10	2.90	5
등급 외	20	3.20	4
총계	86 (97.73%)	3.58	14 (16.28%)

또한 전체 응답자의 16.28%가 부정적 의견이 도출되었으며, 그 이유는 보유한 현장수에 비해 점검횟수 과다하거나 건설현장 자체의 미보유, 점검 시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설업체의 경우 건설업체의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은 사업주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안전 점검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장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세부 평가항목 점수가 미반영되고 대분류 내에서 배점 조정이 가능하므로 현장을 보유한 건설업체는 사업주의 안전의식 차원에서 부정적 의견으로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7〉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 행사 참여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4등급	점검횟수 과다
5등급	현장 보유도 쉽지 않고 매월 실시 어려움, 점검횟수 과다
6등급	사업주가 연로하심, 건설현장 미보유,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주까지 현장점검 및 안전 점검행사에 10회나 참석하게 하는것은 비용낭비 및 비용반영되지 않고 있는 부분임(비용반영이우선)그래도 10회는 많음.
7등급	자료구비 어려움, 착공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시부터 일개 직원의 일로 치부하여 동참하지 아니하며 현장별 위험요소 체크를 진행할 직원의 부족 및 현장소장 업무부담으로 제대로 진행 못함
등급 외	점검횟수 과다, 건설현장 미보유, 자료구비 어려움, 회사 운영상 시간적·물질적으로 이행 어려움

다.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실태조사 결과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에 개선(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는 3.44로 약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격자 등급 기준으로 7등급 및 등급 외에서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8〉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3.50	1
2등급	6	4.17	
3등급	5	3.60	2
4등급	10	3.30	2
5등급	13	3.38	3
6등급	18	3.72	1
7등급	11	3.09	3
등급 외	21	3.24	3
총계	88 (100%)	3.44	15 (17.05%)

또한 전체의 17.05%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평가 체크리스트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 내용 설명 구체화 필요, 회사 규모상 안전보건 경영방침 관리하기 위한 별도 조직 인원 필요, 전담 안전관리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문서 작성 어려움 등’으로 분석되었다. 즉,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을 별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경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건설업체의 안전의식에 대한 수준이 얼마나 보여주는 지표이며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장 보유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따라서 산재예방 평가에서 의미하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은 평가 체크리스트 내용에 부합하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며, 표준화된 양식이 아닌 자율적인 양식으로 작성하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표 IV-9〉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1등급	평가 체크리스트에 대한 구체화 필요, 각 매뉴얼 및 업무절차 마련이 미흡함
3등급	회사 규모와 현장인원의 부족,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은 안전 서류 작성 어려움
4등급	조직인원 부족, 현장 관리자의 협조 필요, 중소기업의 객관적 점수 지표 구축이 어려움, 안전관리 전문가 양성 어려움
5등급	별도의 조직·관리자 선임 필요, 회사 사정상 운영·유지 어려움, 건설경기 침체로 중소기업 여건상 시간과 비용이 드는 측면에서 당장 수립 어려움, 전담관리 인력 부재로 실질적 수립·이행 어려움
6등급	건설현장 미보유
7등급	인력부족, 대기업 위주의 자료보고서이며, 중소기업체는 안전보건에 신경쓰는 것만으로도 벅참. 인력과 공사금액이 충분치 못한 것이 현실, 안전보건 보고서 작성에 외주업체에 의뢰 (비용발생)
등급 외	서류 구비 어려움

3) 안전 보건활동 촉진 실태조사 결과

가. 본사 안전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실태조사 결과

본사의 안전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 3.09로 약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격자 등급 기준으로 2등급, 5등급, 6등급 등에서 부정적 요인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0〉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3.75	1
2등급	6	2.83	2
3등급	5	4.20	1
4등급	10	3.30	2
5등급	13	2.77	6
6등급	18	2.94	4
7등급	11	3.00	4
등급 외	21	3.05	5
총계	88 (100%)	3.09	25 (28.41%)

또한 전체의 28.41%가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본사 안전전담 관리자 확보 어려움’과 ‘소규모 건설업체일수록 전담 안전조직 확보 어려움’, ‘본사 안전담당자는 경력 불인정으로 인한 기피현상 발생’, ‘본사 안전관리자 배치 시 고정비 발생으로 업계 부담’ 등 안전관리 담당 조직원 구성에 난항 등에 대한 여부가 검토가 필요하며, 소규모 업체의 경우 겸직에 대한 일부 허용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본사 안전보건 조직 구성은 건설업체의 자체 안전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로서 건설업체의 매출 규모별로 조직 구성의 차등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안전조직 구성의 현실성 여부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1〉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2등급	안전 자격증 보유자 채용 어려움, 중소건설사에서 본사 안전보건 팀 유자격자 2명에 총원 4명을 맞추는건 회사 경영상 어려움
3등급	전담조직 인원확보 어려움
4등급	본사 안전전담 인원 채용 어려움, 현장보다 본사 전담인원이 더 많음, 본사에 안전관리자 전담 인원을 별도로 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5등급	규모(매출액) 대비 인력 확보 어려움 (유자격자 1인이 적절), 안전 담당 직원 2명 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전문인력 확보의 문제 및 비용의 문제가 큼
6등급	법적 기술인 보유도 어려움, 건설현장 미보유, 본사 안전담당 경력은 입찰(중심,중평) 참여시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현장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직시에도 불이익으로 본사 안전담당을 기피함
7등급	안전관리 인력 부족, 본사 안전관리직 부족, 직원 고령화 및 방대한 업무량을 작업할 인원부족, 현장이 아닌 본사에 안전·보건담당자를 추가로 배치한다는 것은 고정비 증가와 경영악화를 야기시킴. 현장에만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공사비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인정해주어야 함
등급 외	인력확보 어려움, 건설현장 미보유, 중소기업 특성상 인적자원이 제한적

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는 3.56로 약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5등급 이하에서 부정적 요인이 상위 등급보다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2〉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3.75	
2등급	6	4.33	1
3등급	5	4.40	
4등급	10	4.10	
5등급	13	3.23	4
6등급	18	3.28	3
7등급	11	3.18	4
등급 외	21	3.48	3
총계	88 (100%)	3.56	15 (17.05%)

또한 전체의 17.05%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안전 관리자에 대한 인력 수급 어려움과 등급이 낮을수록 현장이 지속되지 않아 정규직 보유 유지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13〉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2등급	정규직 채용 어려움 - 경기 둔화에 따른 현장 감소
5등급	1인은 정규직 보유 가능하나, 그 외 어려움, 건설현장이 적음, 인력 부족
6등급	건설현장 미보유, 지방 중소기업체는 안전관리자의 이직이 잦은 관계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발생
7등급	기술자 채용 어려움
등급 외	기술자 채용 어려움

다.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법령에 따른 보건관리자 배치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1명(92.05%)만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척도는

2.91로 보통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전체 유자격자명부 기준으로 1등급, 5등급 이하에서 강한 부정적 견해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5등급 이하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설문 이해도가 부족하여 해당사항이 없음에도 보건관리자 정규직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4〉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2.50	2
2등급	6	3.17	3
3등급	5	3.60	2
4등급	9	3.33	1
5등급	11	2.27	7
6등급	17	2.82	4
7등급	10	2.80	5
등급 외	19	3.05	5
총계	81 (92.05%)	2.91	29 (35.80%)

또한 전체 응답자의 35.8%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보건관리자 배치현장의 지속성 여부로 인해 정규직 채용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관리비 정규직 비율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15〉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1등급	회사 규모상 보건관리자 보유 어려움, 안전관리자 대비 배치대상이 적어 현장 특정, 사전계획 수립이 어려움(인원유지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약함), 정규직 채용 어려움 - 경기 둔화에 따른 현장 감소, 현장규모 축소 등
2등급	계약직 직원이 다수, 800억 이상 대형 사업의 수주가 어려워 보건관리자를 정직으로 채용하기 어려움

라.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실태조사 결과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기술지도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도 이행수준을 실태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18%만이 응답하였으며, 평균 척도는 3.68로 약한 긍정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6〉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4.00	
2등급	5	4.80	
3등급	5	3.40	2
4등급	10	4.10	1
5등급	12	3.58	2
6등급	17	3.71	1
7등급	10	3.60	2
등급 외	19	3.26	4
총계	82 (93.18%)	3.68	12 (14.63%)

또한 응답자의 14.63%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소규모 현장은 현장 관리 인원을 필수 인원만 배치하기 때문에 기술지도 기관의 지시 사항을 바로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IV-17〉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3등급	소규모 현장의 경우 필수 인원만 배치하여 기술지도 기관의 지시 사항을 100% 이행하기 어려움
4등급	민간 공사는 법 개정전과 같이 건설사에서 거래하였던 기관을 발주처 또는 건축주에게 소개하여 기술지도 계약함
5등급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업체와 계약하지 않는 실정 반영해야 함, 기술지도 업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반영될 수도 있음

4)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강화 실태조사 결과

가.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실태조사 결과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평균 척도 3.05로 보통을 보이고 있다. 유자격자 등급 기준에서도 4등급 이하에서는 부정적 견해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8〉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3.75	
2등급	6	3.33	1
3등급	5	3.20	2
4등급	10	3.00	4
5등급	13	2.69	4
6등급	18	3.06	4
7등급	11	2.64	6
등급 외	21	3.24	4
총계	88 (100%)	3.05	25 (28.41%)

전체 응답자의 26.92%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협력업체가 영세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어렵거나’, ‘종합업체가 영세하여 협력업체의 경쟁을 통한 모집 공고가 어렵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되었다. 즉, 4등급 이하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영세하고 실행이 높은 현상이 별로 없어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를 모집하는데 한계가 있고, 현실성이 결여된다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일정 등급 이상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표 IV-19〉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3등급	협력업체가 영세하여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기 어려움
4등급	종합건설업체가 영세하여 협력업체를 경쟁 모집하기 어려움, 실제 현장에서 행해지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이 0점이나 서류만 잘 내면 우수업체로 평가 받는것은 안됨, 자사의 본사, 현장 안전관리도 어려운 실정이라 협력업체 안전까지 평가받기는 쉽지 않음, 협력업체 규모가 작은곳이 많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업체가 많이 없음, 점수반영 지표 부족, 수준평가할 인재 양성 부족한 현실
5등급	지원할 여력이 안됨. 현실과 괴리가 심함, 협력업체 협조 부족, 전문성 미흡, 하도협력사의경우 많지 않음
6등급	종합 및 협력업체의 열악한 영세 업자가 많음. 건설현장 미보유
7등급	협력업체 안전관리수준평가 미시행, 협력업체 공사금액 작음, 사전에 하도업체의 안전관리수준 평가기준을 알기 어려움, 지방 중소업체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
등급 외	복잡한 서류, 인식 부족, 중소기업 여건상 지원 어려움

나.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실태조사 결과

본사 및 현장 관리자들에 대한 별도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실태조사한 결과 평균 척도 3.22으로 약한 긍정을 보이고 있으며, 1등급에서 평균 척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0〉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실태조사 결과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응답자 수	리커트척도 평균	부정적 의견 응답자 수
1등급	4	2.50	2
2등급	6	3.50	1
3등급	5	3.20	1
4등급	10	3.20	2
5등급	13	2.85	6
6등급	18	3.28	3
7등급	11	3.55	2
등급 외	21	3.29	5
총계	88 (100%)	3.22	22 (25.00%)

또한 전체 응답자의 25.0%가 부정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선정할 수 있는 교육 범위가 없다', '법적 필수교육 외 시간적으로 교육시간 별도 할애하기 곤란하다', '본사 및 현장관리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별도의 안전교육을 수행하기 어렵다', '추가 비용을 발생하여 업계에 부담이 된다'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설문문의 부정적 견해가 많은 이유는 교육 대상자와 교육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외의 관리자도 안전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1〉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부정 의견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부정적 의견에 대한 의견
1등급	선정할 수 있는 교육의 범위가 없음. (보낼만한 교육과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함.), 관리자급의 판단기준, 대상인원이 명확하지 않음. 본사에서 집체교육을 하더라도 단순 실시횟수로만 판단한다면 현재도 점수 확보 가능
2등급	교육 건수 채우기 어려움
3등급	법적 필수교육 외 현장관리를 위해 시간적으로 교육시간 별도 할애하기 곤란함
4등급	직원 5~6명이 2~3개월마다 교육받으러 다닐 수는 없음, 온라인 교육 활성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실무를 병행하며 요구되는 건수 만큼의 교육 이수는 불가능함
5등급	해당인원 부족, 현장 안전관리만 해도 바쁨, 교육횟수가 너무 과다함, 중소기업 여건상 인적,물적 지원에 제한적임, 안전교육에 따른 비용 및 시간의 문제
6등급	건설현장 미보유, 중소기업체는 공사중인 현장 개소의 적음과 경제적 이유로 매년 10건 이상의 교육 어려움
7등급	교육횟수가 너무 과다함
등급 외	비용 발생, 기술인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상 교육이수가 어려움, 교육횟수가 너무 과다함

4) 가점항목 실태조사 결과

가점 항목에 대한 점수 획득 용이성에 대한 평균 척도 결과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3.25) >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승인(2.45)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실적(2.36)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2.26) >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2.09)’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평균 배점은 2점~3점 범위 내에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각 항목별 점수 획득 가능성에 대한 긍정평가 업체수는 ‘시스템 비계 실적(41개 업체) >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16개 업체)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14개 업체)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적 지원 실적(12개 업체) >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10개 업체)’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개 이상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업체가 47개로 전체의 53.41%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2〉 가점 항목 실태조사 결과

항목	평균척도	평균배점	긍정평가 수	1개 이상 긍정 평가 업체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2.26	2.69	14	47 (53.41%)
2)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2.09	2.40	10	
3)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활용 실적	2.36	2.43	12	
4) 시스템 비계사용 실적	3.25	3.01	41	
5)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2.45	2.59	16	

3. 실태조사 시사점

실태조사 결과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안)에 대해 대부분의 설문 응답자들이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 응답함으로써 자사의 해당 사항이 없는 항목에 대한 부정 평가가 일부 반영되어 평균 척도가 다소 낮은 것을 감안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한 긍정 지수를 살펴보면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사업주 현장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등은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이 강하다 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 등은 부정적 견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23〉 세부평가 항목별 실태조사 결과

구분	대분류	세부평가 항목	평균척도
배점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실적	3.84
		사업주 현장안전점검 및 행사참여	3.58
		안전보건 경영 방침 수립	3.44
	안전보건활동촉진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3.09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3.56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2.91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수준	3.68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3.05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	3.22
	가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2.09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활용 실적		2.36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3.25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2.45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안전보건공단 실무자와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먼저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에 있어서는 전담 안전관리자 수급의 문제로 인해 조직구성 완화 및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도출되었으나, 겸직을 허용할 경우 건설업체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체계 구축에 대한 본래 취지에 맞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 수렴이 되었다. 다만,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에 대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담 안전관리자의 배치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정리하였다.

〈표 IV-24〉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실태조사 전(안)	실태조사 후(안)
- 평가 대상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 급별 기준 - 평가 방법 ; 시평액 1위~20위 (인원 계산식 참조) 1~2등급 업체 ; 임직원 4명(유자격 2명) 만점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3~4등급 업체 ;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5등급 업체 ;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6등급 이하 업체 ;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 70%	- 평가 대상 ;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등 급별 기준 - 평가 방법 ; 시평액 1위~20위 (인원 계산식 참조) 1~2등급 업체 ; 임직원 4명(유자격 2명) 만점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3등급 업체; 임직원 3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4등급 업체; 임직원 2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70% 전담 조직만 있으면 40% 5등급 이하 업체 ; 임직원 1명(유자격 1명) 만점 임직원 1명 70%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평가를 통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기존에 통합하고 있던 평가항목을 구분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연구 이전 단계에서부터 논의된 사항으로서 2024년에 이미 구분하여 산재예방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진행된 결과를 검토한 이후 구분 여부를 검토하며, 현시점에서는 개선(안)대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종합건설업체가 협력업체 선정 시 안전관리가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게 하고 협력업체도 자구적인 안전 노력을 조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내 건설 환경상 규모에 따른 종합건설업체와 협력업체의 관계에 따른 실효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실효성 측면은 개선(안) 수립 이후 추가 검토하며 현시점에서는 내부 규정을 구축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안전문화 조성에 일정 부분 기여될 것으로 분석되어 기존 개선(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체 내에 안전관리자만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인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하여 건설업체의 안전문화 조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안전교육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안전교육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의무적인 안전교육과 일상적인 자체 안전교육을 제외한 안전교육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며, 실례로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에서의 고용노동부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교육, 동절기 및 해빙기 등 시기별 안전교육 등에 대한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등 관리자급 대상 교육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검토되었다.

〈표 IV-25〉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실태조사 전(안)	실태조사 후(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 사업장별 현장소장, 현장 관리자, 본사 관리자 (단, 안전관리자, 행정지원 등은 제외) - 평가 방법 ;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단, 산안법 및 타법령에 정한 법적 교육 이수기준 제외(예시) 산안법 제31조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기타 재해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안전교육 등 및 자체 보수교육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 사업장별 현장소장, 현장 관리자, 본사 관리자 (단, 안전관리자, 행정지원 등은 제외) - 평가 방법 ;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및 건설현장의 관할 구역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관점의 교육 등 포함 단, 산안법 및 타법령에 정한 법적 교육 이수기준 제외(예시) 산안법 제31조 (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기타 재해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안전교육 등 및 자체 보수교육 제외

이러한 내용을 종합 고려하여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평가지표의 최종 고시(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V.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및 효과분석



V.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및 효과분석

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활용 방안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건설업체의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율적인 안전활동 촉진을 위해 공공공사 입·낙찰 제도에 가점으로 반영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의 사망 사고율 및 산업재해율을 감소시키고자 정부는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안전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기획재정부에서 2023년에 공표한 ‘국가계약선진화 방안’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고자 사고사망만인율 및 산재예방활동 실적을 종합심사제의 사회적 가점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에 조달청 등 주요 발주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종합심사제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에 있으며, 2025년 5월경에 시범사업 결과에 따른 「계약예규」 후속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다음 표와 같이 입찰 및 낙찰제도에 있어 가점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되어 배점제도로 검토되고 있는 부분은 「국가계약법」령에 따른 종합심사제 부분이며, 해당 부분의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제로 확대 운영될지 여부도 결정될 수 있다.

〈표 V-1〉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반영 현황

구분	대상금액(추정가격)	현재	검토중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300억이상 또는 200억 이상 10개 대상 공종	가점	배점
적격심사제(국가 및 지방)	50억~100억 미만	가점	가점
종합심사제(국가)	300억원 이상	가점	배점
종합평가제(지방)	300억원 이상	가점	가점

2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발주기관이 입찰참가자격심사 가점 +1.0점에서 배점 +1.5점으로 종합심사제 사회적책임 항목에 있어 건설안전 분야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가점 +0.8점에서 배점 1.0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가점으로 채우는 기회가 없어지고 오히려 더 부족한 부분을 양성하고 가점 기회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V-2〉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세부평가 항목 현황

구분	기존(가점)		시범특례(배점)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	A. 평점95점 이상	+1.0	A. 90점 이상	1.5
	B. 평점90점~95점미만	+0.8	B. 80점~90점 미만	1.3
	C. 평점85점~90점미만	+0.6	C. 70점~80점 미만	1.1
	D. 평점80점~85점미만	+0.4	D. 60점~70점 미만	0.9
	E. 평점75점~80점미만	+0.2	E. 50점~60점 미만	0.6
	F. 평점75점 미만	0.0	F. 50점 미만	0.2
종합심사제(국가)	A. 평점90점이상	+0.8	A. 90점 이상	1.0
	B. 평점80점~90점미만	+0.72	B. 80점~90점 미만	0.9
	C. 평점70점~80점미만	+0.64	C. 70점~80점 미만	0.8
	D. 평점60점~70점미만	+0.56	D. 60점~70점 미만	0.7
	E. 평점50점~60점미만	+0.48	E. 50점~60점 미만	0.6
	F. 평점50점 미만	+0.40	F. 50점 미만	0.5

실례로 특정 건설업체가 산업재해예방평가를 85점을 획득할 경우 기존에는 +0.72점의 가점 기회를 공사수행능력 점수에 반영이 가능하였으나, 시범특례에서는 -0.1점을 공사수행 능력점수에서 더 감점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종합심사제에 있어 배점만으로는 만점자가 많으나, 사회적 책임 점수 가점을 반영하면 입찰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만점자가 되는 상황에서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가 배점제로 전환될 경우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며 낙찰의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종합심사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건설업체는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가 반영이 의무화되며, 종합심사제의 공동수급체 구성을 고려할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1,000순위 외에서도 산재예방활동 평가지표가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적격심사제까지 가점이 배점제로 전환될 경우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는 대부분의 종합건설업체에게 의무화될 것이며, 2022년부터 시작된 업종별 상호시장 진출 허용에 따라 전문건설업체도 종합건설업에 참여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평가지표는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이 현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및 종합심사제의 배점제 운영은 중대형 업체들만의 선택사항에서 필수사항으로 전환되어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로 볼 때 5등급 이상(토건면허 기준 약 1,186개사)는 필수사항이 되며, 공동도급 방식으로 참여하는 업체를 포함할 경우 종합 및 전문공사업체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3〉 국내 공공공사 계약 제도상 실적평가 참여 업체 규모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참여가능공사규모	
		토목	건축
조달청유자격자명부	5등급(330억~200억)	200억~330억	220억~400억
시공능력평가	시공능력 200억 이상 업체수 ; 토건기준 1,186개		

또한, 사망만인율이 전 건설업종으로 확대되면서 종합건설업체도 협력업체

선정 시 시공능력 우수 업체임과 동시에 건설안전 관련 평가항목을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의 활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효과분석

이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세부평가항목 및 평가 기준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안전보건관리 활동 및 역량 강화와 안전환경 조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국내 건설산업에 있어 재해 발생 감소 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산업재해예방 실적평가의 개선 방안을 통해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편익(Benefit)-비용(Cost) 분석 방법을 실시하고자 한다. 먼저 비용으로는 건설업체의 실적평가 참여 현황과 개선(안)을 대상으로 평가기관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평가 업무 생산성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예상 투입 인력량 및 소요 비용을 산출하였다. 편익으로는 기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시행에 따른 재해 감소 효과를 추정하여 건설업의 사망자수 감소와 산업재해 보험급여 및 산업재해 간접비용 발생 비용을 산출하여 절감 금액에 반영하였다.

1)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에 따른 비용 도출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의 업무 소요량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건설업체 수와 추가된 세부평가 항목의 업무량을 계상하여야 한다.

먼저, 기존보다 늘어날 수 있는 건설업체 수의 경우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입찰참가자격심사 및 중심제에 배점 전환을 두고 설정해 보면, 종합건설업체의 경우 필수 1,186개사 외에 선택으로 공동도급으로 참여 가능한 업체

수를 감안해야 한다. 현재 건설협회에서 공표한 시공능력 공시액을 기준으로 고시 금액 기준 이상의 시공능력 평가액을 확보한 업체는 약 2,500개가 있으며, 이중 필수를 제외한 약 1,300개가 최소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주요 전문업종별 시공능력 고시 금액 이상 업체는 2,941개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표 V-4〉 전문업종별 시공능력 공시 고시금액 업체 수

지반	실내건축	금속창호	도장습식	조경식재	철콘	합계
45	530	670	640	148	753	2,941
구조물해체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	수중준설	삭도	
354	326	23	253	60	32	

이 중 최근 3개년(2020년~2022년) 산재예방 규모별 참여율을 고려하여 종합건설업체는 약 10% 내외, 전문건설업체는 5% 내외로 가정한 결과 약 1,463개 정도의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대상군이 설정될 수 있다.

〈표 V-5〉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예상 참여자 수

구분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합계
필수	1,186	-	1,186
선택	130(1,300×10%)	147(2,941×0.05%)	277
합계	1,316	147	1,463

또한 현재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업무를 수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량을 계산해 보면 최근 3개년 실적평가 참여 업체 수 508개 평가 항목 수 4개로서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3인)이 5개월 정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시스템 고도화(전산화)를 전제로 할 경우 증가되는 참여 업체 수만을 업무량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평

가 항목에 대해서는 수작업 검토가 필요한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에 대한 평가 체크리스트가 반영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의 세부평가 항목인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의 경우 해당 업체가 문서로 작성하고 평가기관이 체크리스트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검토해야 하므로 별도의 업무량이 추가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체당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검토하는데 최소 2Man·Hour 기준으로 하루에 검토할 수 있는 양은 4개로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예상 업무량을 1인·일 단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표 V-6〉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추가업무량 및 추가 비용

구분		산식	결과	
현재업무량	대상 508개	3인*22일*5개월	330인·일	
개선업무량	대상 1,463개	(1,463/508)*3인*22일*5개월	950	1,315 인·일
		1,463/4	365	
추가 업무량		(1,315-330)	985인·일	
평가 소요 인력		(1,315/330)*3인	12인	
추가 소요 인력		12인-3인	9인	
추가 소요 비용		9인*(68,550천원+13,710천원)	740,343천원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에 있어 기존 업무량이 약 330인·일에서 개선(안)에 대한 업무량이 1,315인·일이 예상되며, 업무 기간이 고정될 경우 최소 12인으로 9인 추가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23년도 공단 정규직 임금과 간접비 20%를 감안한 추가 비용은 약 740,343천원 정도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인력에 대한 추가 비용 예상치이며,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별도로 감안하여야 한다.

2)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에 따른 편익 도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편익은 기존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 확대 시행에 따른 감소 효과를 추정하는 것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 감소와 그에 따른 산재보험 급여 및 산업재해 간접비용의 절감 금액을 반영할 수 있다.

산재예방활동 지표가 제정되었다 하여 사고사망자가 감소 되었다는 것을 단순지표로 가늠할 수 없으며,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산재예방 실적평가 개선(안)이 기존의 산재예방실적 평가표보다 합리적인 평가지표로서 의미는 있으나, 사고사망자가 더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지표로써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산재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생성된 시점의 전후의 사고사망자 수로 단순 비교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산재예방활동 실적에 대한 재해 감소 효과는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시행된 시점의 전·후의 3개년 평균 사망만인율 변화를 반영하여 추정한 결과 약 20.1% 정도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7〉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망만인율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감소율
사망만인율	1.62‰	1.65‰	2.01‰	1.34‰	1.30‰	1.58‰	20.1%
3개년 평균	1.76‰			1.41‰			

현시점에 재해 감소율의 평균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규모별 사고사망자⁵⁾ 대비 산재예방실적 예상 참여율을 반영하고 예상 참여율마다 20.1%의 재해 감소 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전체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는 2023년 대비 약 18.11명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

5) 안전보건공단, 2023년 유족급여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 현황 인포그래픽(2024)

〈표 V-8〉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구분	50억 미만	50억~120억 미만	120억~800억 미만	800억 이상	합계
사고사망자	243명	24명	50명	36명	353명
유자격명부	6등급 이하		2~5등급	1등급	-
산재예방 재해실적 예상참여율	5%	10%	80%	100%	-
사고사망재해 효과	1%	2%	16%	20%	-
사고사망자 감소 효과	2.43명	0.48명	8명	7.2명	18.11명

사고사망자 감소에 따른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직접 편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산재보험급여의 1인당 평균 금액 1.67억원(2022년, 건설업 기준)⁶⁾을 반영하여 산출하고 간접편익은 산업재해 감소에 따라 추정되는 산업재해 간접비용⁷⁾의 절감 금액이라 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급여 절감금액(직접편익)의 4배⁸⁾로 추정할 수 있다.

6) 1인당 산재보험급여액(16,477,498원)으로 평균 유족보상의 일시금과 1인당 평균 장례비를 합산한 결과임(산재보험 사업연보, 고용노동부 2022)

7) 산업재해에 따른 간접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제외한 사업장 자체보상비용, 근로시간 손실, 장비손실, 작업중지에 따른 공사지연 부대비용, 과태료 및 벌금 지출 비용 등을 합산한 것을 의미함(임세중, 2023)

8) 업무상의 재해로 인해 인적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의미하며 하인리히는 총 '손실비용=직접비+간접비'로 볼 때 직접비가 1일 때 간접비는 4로서 계상(산업안전대사전, 2004)

〈표 V-9〉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에 따른 편익 비용

구분		단위	결과
재해 감소 효과	2023년 사망자수	명	353
	예상 사망자수 감소	명	18.1
사망자 1인당 산재보험급여		(천원/인)	164,775
편익	직접편익 (산재보험급여 지급절감액)	천원	2,982,428
	간접편익 (산업재해 간접비용 절감액)	천원	11,929,710
	합계	천원	14,912,138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산재예방 실적평가 개선시 비용(cost)은 안전보건 공단이 평가 업무에 추가되는 비용(약 740,343천원), 편익(benefit)은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활성화 될 경우 감소되는 사고 사망자 수의 절감 비용(14,912,138천원)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익-비용(BC ratio)은 약 20.14로서 매우 높은 경제적 이득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평가 업무에 추가되는 비용은 인력 비용만 감안 하였으며, 여기에 감안하지 않은 산재예방활동 실적 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한 개발비를 반영할 경우 편익-비용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VI. 결론



VI. 결론

이 연구에서는 건설산업에 있어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게 하기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안전강화 정책에 맞춰 기존의 1,000 순위 이내에서만 활용하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를 전방위적인 건설산업에 맞춰 개편 시 실질적인 작동이 가능하도록 객관성 및 실효성 등이 확보된 평가지표로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도 수행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개선 지표를 표적 집단면접법(FGI)을 적용하여 건설업체 규모별 특성을 가미하고, 평가 체계의 객관성 확보와 실질적 작동 시스템을 마련하여 자발적인 안전활동 체계를 유도할 수 있도록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대분류(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안전보건활동 촉진,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기준 3개 및 가점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에서는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사업주 현장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으로 총 3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안전보건활동 촉진에서는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수준’으로 총 4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에서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으로 총 2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가점 부문에서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활용 실적’,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으로 총 5개의 세부 평가항목을 확정하였다.

또한, 종합건설업체의 규모별 특성을 가미하여 대분류의 배점 항목만을 설정(사업주의 안전의식 강화 40점, 안전보건활동 촉진 40점,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점)하고, 세분류 평가항목 해당 여부에 따라 대분류 배점 안에서 점수 조정이 가능하도록 유동성을 갖게 하였다.

가점항목의 경우 세부 평가항목당 각 2~3점씩 부여하였으며, 총 5점의 만점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이수 실적,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수준, 사업주 현장안전 점검 및 행사 참여,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안전보건 경영방침 수립’ 등의 세부평가 항목에서는 긍정적 견해를 보인 반면,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안전보건 조직 적정성 및 역량,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시’ 등에서는 부정적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정적 견해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규모별 역량에 따라 비용 증가, 안전관련 전문가 수급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써 시범 사업을 통해 해당 부분을 감안한 세부 평가 항목의 평가방법에 대해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건설업에 있어 안전관리 강화 및 산업재해 감축의 일환으로 안전에 대한 사후 규제 및 처벌 중심 정책에서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과 같은 자발적 안전문화 조성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는 대표적인 자발적 안전문화 환경을 유도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즉, 전방위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활성화는 전반적으로 건설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관리 역량 강화를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건설업의 산업재해를 감소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가 공공공사에 있어 사업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경우, 개선(안)의 평가 기준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승준(2020), 건설업 산업재해예방활실적평가 산정지표 개선 용역, 안전보건공단
- 김판기(2022),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과 건설업 사고지표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희택(2013), 공공공사의 입찰과정에서 안전평가체계와 요건의 비교분석-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14권 제4호, pp.130-139
- 신성우(2017), 건설 발주기관의 안전경영 평가 모델 개발, 한국안전학회지, Vol. 32, No. 1, pp. 82-89.
- 신승현(2020),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제도 실효성을 위한 발주자 책무부여 방안,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24 n.1 p. 13
- 신주열(2018), 건설현장 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안전 정책 방향, 건축(대한건축학회지), Vol.62 No.12, pp.57-61
- 신철식(2014),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역량 평가체계 개발, 국토교통부
- 임세종(2021), 비용편익분석을 통한 안전보건대장의 경제적 효과성 분석, 한국건축시공학회지, 제21권 제5호, pp.409~.420
- 전형배(2021),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 의무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정민형(2020),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수준 평가제도 개선 연구, 국토 안전관리원
- 정성춘(2020), 건설업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개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조재용(2022), 일본 공공공사 입·낙찰제도 검토 및 시사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 최상복(2004), 산업안전대사전, 도서출판 골드
- 한경보(2014),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효율적인 재해율 저감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홍성호(2022), 건설공사 원·하수급자 협력적 안전관리를 위한 과제, 산업안전보건강조 포럼 발표자료
- Fang, D.P., Xie, F., Huang, X.Y., and Li, H.(2004), Factor Analysis-based Studies on Construction Workplace Safety Management in China”, International Journal of Project Management, Vol. 22, No. 1, pp.43-49.
- 고용노동부(202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2023), 2022년도 산재보험사업연보
- 고용노동부(2023), 2023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
- 고용노동부(2023), 건설현장 TBM 실천 가이드
- 고용노동부(2023),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편람
- 고용노동부(2023),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위한 최초-상시평가 중심의 위험

성평가 실행안내서

국토교통부(20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안전관리원(2022),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가이드

조달청(202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202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조달청(2022),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조달청(2023),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 기준

행정안전부(202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고용노동부(2023),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202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국토교통부(2023), 건설산업기본법





Abstract

Improvement of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Objectives :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operates a proactive and self-regulatory safety initiative called the 'Evaluation of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for Construction.' However, this evaluation is limited to the top 1,000 companies based on earned values of construction work, making it insufficient as a comprehensive safety reinforcement measure across the entire construction industry. Additionally, the current evaluation indices, which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their creation in 2014, are viewed as lacking in effectiveness. To address these issues, the government aims to expand the evaluation scope to include all construction companies, including specialized contractors, and to update the evaluation indicators to reflect industry-specific characteristics. By doing so, it is intended to foster a voluntary safety management environment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existing

evaluation indices by reorganizing it to fit the entire construction industry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safety reinforcement policy in order to create a self-regulating safety environment for construction companies with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reby ensuring more practicality, objectivity, and effectiveness.

Key Research Findings and Conclusion :

This study aimed to develop more objective and rational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The existing indicators created in 2023 were improved by applying focus group interviews(FGI) to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mpany size and secure objectivity and functionality.

As a result, three primary categories were established: "Strengthening Safety Awareness of Business Owners," "Promoting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and "Spreading Safety Culture and Strengthening Capabilities." In the "Strengthening Safety Awareness of Business Owners" category, three specific sub-indicators were defined: "Completion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by Business Owners," "On-site Safety Inspections and Event Participation by Business Owners," and "Establishment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Policies."

In the "Promoting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category, four sub-indicators were identified: "Appropriateness and Competency of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s," "Ratio of Permanent Safety

Managers,” “Ratio of Permanent Health Managers,” and “Implementation Level of Technical Guidance for Accident Prevention.”

In the “Spreading Safety Culture and Strengthening Capabilities” category, two sub-indicators were set: “Evaluation of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Partner Companies” and “Safety Training Completion for Management-level Personnel.” The primary category scores were set as follows: “Strengthening Safety Awareness of Business Owners” (40 points), “Promoting Safety and Health Activities” (40 points), and “Spreading Safety Culture and Strengthening Capabilities” (20 points). To provide flexibility, specific sub-indicator assessments allow for score adjustments within the primary categories based on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general and specialized contractors.

Additionally, five bonus indicators, with a maximum of five points, were established, including “Certification of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Systems,” “Awards for Excellence in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Utilization of Financial Support Programs within the Korea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gency,” “System Scaffolding Usage Performance,” and “Self-initiated Design Change Requests and Approvals in Compliance with Legislation.”

Through a field survey of the indicators identified by the focus group, some negative feedback emerged concerning “Ratio of Permanent Health Managers,” “Evaluation of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Partner Companies,” “Appropriateness and Competency of Safety and Health Organizations,” and “Safety Training Completion for Management-level Personnel.” due to concerns over increased costs

and challenges in hiring qualified safety professionals by smaller companies. Therefore, a pilot version of the improved indicators may require adjustments to make certain sub-indicators more practical.

The government is shifting from a post-regulation and penalty-focused approach to a voluntary safety culture policy, aiming to establish a self-regulated preventive safety framework as part of effort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and reduce industrial accidents in constructi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is recognized as a key policy to encourage a self-regulated safety culture. In turn, promoting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industry-wide is expected to strengthen the construction sector's independent safety management capacity, ultimately playing a crucial role in reducing construction-related industrial accidents.

Looking ahead, should the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of construction companies become a critical criterion for contractor selection in public projects under government policy, tracking and management will be essential to ensure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improved evaluation criteria.

Key words :

Construction companie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ctivities,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 Improvement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제2쪽)

I. 건설현장 개요

연 번		현장명	
방문 일시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금액 (VAT 포함)	

II. 사업주 안전·보건 간담회

참 석 자	본사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현장	(소속)	(직급)	(성명)
		(소속)	(직급)	(성명)

주요 내용	간담회 사진

III. 현장 안전·보건활동

작업 전 안전회의(TBM)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산업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아차사고 신고제도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비상조치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이행 <input type="checkbox"/> 미이행

참고자료

부록 2. 안전·보건관리체계 매뉴얼 체크리스트 예시

※ 평가결과 :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한 결과 → Y/N 로 표기

평가항목	평가결과	비고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부록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별지 서식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

사업체	사업종명	업종 또는 주요생산품명	
	소재지		
	근로자 수	총 명 (남 / 여 / 별)	전화번호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보건의	성명	기관명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자격/면허번호		
	경력	기관명	기간
	학력	학교	학과
	선임 등 연·월·일		
	전담·겸임구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 및 제2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금지사함

본 민첩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 (㎡(저장용종이))

부록 4. 실태조사 양식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1차 실태조사 기간 2024, 9/25~9/30) (2차 실태조사 기간 2024, 10/1~10/7)

• 설문문항은 총 31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요시간은 약 5분 내외입니다.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고도화를 위한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본 조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재)한국조달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발주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고도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본 실태조사는 해당 연구의 일환으로 실시됩니다.

해당 연구는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실무자분들의 현실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의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에 본 실태조사에서는 건설업체 있어 안전과 관련된 실무자분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의 현행 기준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실무자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향후 관련 고시 개정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이 될 본 실태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자의 응답내용과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본 조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절대 이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9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KIP 한국조달연구원

2024.09.25, 오전 08:19 - 2024.10.07, 오후 08:00

* 답변 필수

* 1. 성명

이름을 입력해주세요.

* 2. 직급 / 담당업무 (ex. 대리, 과장, 책임, 프로 등 /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공무 등)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 3. 연락처**

연락처를 입력해주세요. (-없이 번호만 입력)

*** 4. 본인 소속 기관의 유자격자명부 기준 등급 (2023년 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등급 외

*** 5. 본인 소속 기관의 유자격자명부 기준 순위 (2023년 기준, ex. 00위)**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

현행 기준			개선(안)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100점)	1.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참여 (40)	① 안전보건교육 이수 ② 현장 안전보건점검,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사업주)	가. 공통항목 (100점)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2. 선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40)	① 선임 신고원 안전·보건관리자 - 60% 이상인 경우 - 50% 이상인 경우 - 40% 이상인 경우 - 30% 이상인 경우 - 20% 이상인 경우 - 20% 미만인 경우		2. 안전보건 활동 촉진	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①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3. 안전보건 조직 (20)	① 조직구성 및 전담 직원수 (업체규모별**차등기준 적용 :1군20위내/1군20위외 /2군/3-4군)		3.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중합건설업체 대상) 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나. 가점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인증 유지 인증 신청	나. 가점항목 (최대 5점)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④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 다음 6 ~ 31 문항에서는 현행 기준과 비교하여 **산재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개선(안)**에 대한 각 세부 평가항목별 **실요성** 여부의 **설문**이 진행될 예정이며, 각 세부항목별 평가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성실히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1-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p>1. 사업주 안전인식 강화</p> <p>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현행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대상 : 사업주 평가 방법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대면교육 이수 여부 평가 (온라인교육 제외) 대형 건설사 리더회의 운영 및 사업주 참석업체 한하여 해당 교육 이수 인정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평가기간 :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평가 자료 : 교육이수증(수료증)
	<p>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비점 제외)</p> <p>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p>

* 답변 필수

* 6.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1-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7. 6번에서 '가-1-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1-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1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현행 유지) 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현행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 대상 : 사업주 ▪ 평가 방법 :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인정 (월 최대 1회 인정) (* 평가기간 :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 평가자료 : [별지 1]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현황, 사업주 안전·보건활동 결과보고서
	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8.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1-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1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점수 확보 어려움 1 2 3 4 5 점수 확보 용이함

9. 8번에서 '가-1-② 사업주 현장점검, 안전점검행사 참여'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1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1-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①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한정 유지) ② 사업주 현장심층.안전심층조사 참여 (한정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p>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방법 :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 수립 여부 및 실적(결과) 평가 : 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모두 이행 시 만점 <table border="1"> <thead> <tr> <th>평가 항목</th> <th>평가 결과</th> </tr> </thead> <tbody> <tr> <td>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td> <td></td> </tr> <tr> <td>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진급 조치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에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td> <td></td> </tr> <tr> <td>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td> <td></td> </tr> <tr> <td>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자료 : 1. 평가기간 내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 및 결과보고서 (* 평가기간 :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 ~ 12월 31일) 2. 차년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보고서 (* 차년도 평가기간 : 평가년도의 1월 1일 ~ 12월 31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ex) 2024년 기준, 업체 제출 서류 1. 2023년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 및 결과보고서 2. 2024년 안전보건경영방침 계획보고서 </div>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진급 조치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에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평가 항목	평가 결과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1.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는가?																										
1-2. 안전보건 경영방침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이 정기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2. 사업주 사고 보고 및 조치 결과 확인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2-1. 사고 재해 발생 시 대응조치 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여 이를 공유하고 있는가?																										
① 작업 중지, 근로자 대비,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②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업에 대한 구호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③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는가?																										
3. 관련법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진급 조치 주관의 현장별 안전점검 지원에 대한 절차 및 계획이 문서화되고 정기적으로 수립되고 있는가?																										
4.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유해·위험요인(위험성평가) 확인 및 개선에 위한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 전년도 안전보건경영지침 수립 목표 및 세부 계획을 모두 이행하였는가?																										
6. 차년도 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시 전년 대비 새롭게 추가된 항목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답변 필수

10.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1-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1. 10번에서 '가-1-③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p>2. 안전보건 활동 촉진</p> <p>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 아래 바질 기준은 점수 차등 평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방법 : 초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위-20위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원계산식 참조 15점 - 인원 전담조직(임원포함) 있으면 5점 ○ 1,2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4명 이상(유자격 2명 포함) 15점 - 임·직원 3명 이상(유자격 2명 포함) 10점 - 인원 전담조직 있으면 5점 ○ 3,4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3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20점 - 임·직원 2명 이상 10점 ○ 5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2명 이상(유자격 1명 포함) 20점 - 임·직원 1명 이상 10점 ○ 6등급 이하 업체 (6, 7등급 및 등급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1명 이상(유자격) 20점 - 임·직원 1명 이상 10점 평가 자료 : 1. [별지 4]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현황 2. 본사 안전보건 전담 조직도 및 업무 분장표 3. 본사 전담자별 기술인력회 경력증명서
	<p>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p>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p>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등급	업체수 (24년 시평역 기준)
1	77개 (1 ~ 77위)
2	115개 (78 ~ 192위)
3	152개 (193 ~ 344위)
4	305개 (345 ~ 649위)
5	537개 (650 ~ 1186위)
6	734개 (1187 ~ 1920위)
7	539개 (1921 ~ 2459위)

* 답변 필수

12.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3. 12번에서 '가-2-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2-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1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동항목	①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 아래 배점 기준은 징수 처분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문이며, 해당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가 대상 : 사업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 • 평가 방법 : 정규직 비율 및 근속연수 평가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만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8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6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4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2점 •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전산 연계를 통하여 평가 예정)
	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14.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2-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1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5. 15번에서 '가-2-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1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2-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1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① 분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 평가 방법 : 정규직 비율 및 근속연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 - 정규직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8점 - 정규직 비율이 60% 이상인 경우 6점 - 정규직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4점 - 정규직 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2점 - 정규직 비율이 40% 미만인 경우 0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보고서 전산 연계를 통하여 평가 예정)
	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16.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2-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7. 16번에서 '가-2-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2-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50억 미만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50억 미만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① 본시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②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③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현행 유지)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
	<p>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중, 소형 및 전문업체 대상)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배점 제외)</p> <p>(*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자동 병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50억원 미만 공사를 수행한 건설업체 평가 방법 : 지도사항 미이행 여부에 따른 발주처 통보 횟수 : 이전 지도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발주처 통보 횟수 없을 시 인정 ex) 총 배점 10점 중 발주처 통보 횟수당 -2점 감점 (최하 이상일 경우 0점)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 개정 법령 시행(2.8.18)* 이후 이전 지도사항에 대한 불이행율이 높지 않음을 고려하여 불이행 횟수당 감점 차등 적용 - (개정 법령 내용) 이전 기술지도 내용에 대해 불이행시 그 사실을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통보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K2B 전산 연계를 통하여 건설업체별 지도사항 불이행 횟수 평가 예정)

18.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2-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50억 미만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50억 미만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19. 18번에서 '가-2-④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0억 미만 건설현장 보유 업체만 답변 필수이며, 50억 미만 건설현장 미보유 업체의 경우 20번 항목으로 넘어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3-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가. 공통항목	3.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p>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종합건설업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종합건설업체 평가 방법 : 건설업체별 협력업체 선정 기준 내 안전관리 수준평가 기준 여부 평가 자료 : 입찰공고문 또는 내부 협력업체 선정기준 (협력사 선정 시 업체의 안전관리 수준 고려 증빙이 가능한 자료 : 협력업체 사망인원을,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계획 수립 등)
		<p>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p>

* 답변 필수

*20.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3-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21. 20번에서 '가-3-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가-3-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p>가. 공동행동</p>	<p>①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종합건설업체 대상)</p> <p>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p> <p>(*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기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인력 : 본사 관리자, 사업장별 현장 소장 및 현장 관리자 (단, 안전-보건관리자 및 행정 지원 등 제외) 평가 방법 : 안전-보건 교육이수 횟수 (단,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법령에 의한 법적 교육이수 기준 제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margin: 5px 0;">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제5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타법령에 의한 법적 교육이수 기준 제외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기준 준용하여 업체규모별 교육이수 횟수 만점기준 차등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1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2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7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3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5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4등급 업체 : 안전-보건 교육 3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5등급 이하 업체 : 안전-보건 교육 1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평가 자료 : 교육이수증(수료증)

* 답변 필수

22.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3-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23. 20번에서 '가-3-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항목에 대하여 1,2번(점수확보 어려움)을 선택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24. 귀하가 속한 회사는 '가-3-②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항목 평가시 만점 기준으로 몇 건의 교육 횟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ex. 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답변을 입력해주세요.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나. 가점항목'

구분	평가 항목 및 산정 기준
나. 가점항목 (가점의 총합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점만 부여)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원형 유지) (*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당해연도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아 유지중인 업체 평가 방법 :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 중인 경우 5점 ○ 안전보건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KOSHA-MS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당해연도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업체 평가 방법 : 안전보건 관련 수상 실적 유무 평가 자료 : 표창장 (안전보건 관련 수상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의 장 직인 필수)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평가 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재정지원 사업 실적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②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③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④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④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 아래 배점 기준은 점수 차등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이며, 해당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민간공사에서 시스템 비계 적용 사업장 평가 방법 :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 비율 =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수) ÷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 이상 : 2점 - 65% 이상 - 80% 미만 : 1.5점 - 50% 이상 - 65% 미만 : 1점 - 35% 이상 - 50% 미만 : 0.5점 평가 자료 : 별도 제출 자료 없음. (대한건설협회 상호협력평가 항목 중 및제형 작업발판 DB 연계하여 평가 예정)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가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설계변경요청)에 따라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사업장 평가 방법 :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사업장 설계변경을 요청 및 승인이 이루어진 실적 유무 평가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

* 25.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6.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7.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8.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④ 시스템비계 사용 실적'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 29. 귀하가 속한 회사는 '나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항목에 대하여 점수 확보가 가능한가?

1 2 3 4 5
 점수 확보 어려움 점수 확보 용이함

이전

다음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의견 수렴

현행 기준			개선(안)		
구분	평가 항목	배점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예시
가. 공통항목 (100점)	1.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참여	(40)	가. 공통항목 (100점)	1. 사업주 안전인식 강화	(40)
	2. 선임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40)		2. 안전보건 활동 촉진	(30)
	3. 안전보건 조직	(20)		3.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30)
나. 가점항목 (5점)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5점)	나. 가점항목 (최대 5점)	①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②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③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직자원 사업 활동 실적 ④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⑤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3) (3) (2) (2) (3)

* 답안 필수

30.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의 '가. 공통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
는가? (위 그림의 맨 오른쪽 배점 예시 참고, 3가지 항목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체크)

	10%	20%	30%	40%	50%
1. 사업주 안전인식 강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안전보건 활동 촉진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31.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의 '나. 가점항목'에 대한 배점 비중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
는가? (위 그림의 맨 오른쪽 배점 예시 참고)

	1점	2점	3점	4점	5점
1. 안전보건경영시 스템 인증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2. 안전보건관리 관련 우수업체 수상 실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산업안전보건공 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4.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5.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인 및 승인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이전

제출

부록 5. 고시 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장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p> <p>제4조(평가기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은 평가년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평가기간"라 한다) 동안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p> <p>제5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를 신청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업체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평가년도 2월 말까지 공단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p> <p>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 2. 전담 안전 ·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3. 본사 안전 · 보건 전담자 <p>③ 가점 항목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여부를 평가하여 부여한다.</p> <p>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건설업 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제2항제2호를 평가하지 않는다.</p> <p>제7조(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 · 보건활동은 사업주 안전 · 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 · 보건활동 참여 실적으로 평가한다.</p>	<p>...(생략)...</p> <p>제6조(평가항목) ①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은 별표1의 배점기준에 따라 공통 항목과 가점 항목의 합계로 평가하며 총 평가점수는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공통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40점 2. 안전보건활동 촉진 40점 3.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점 <p>③ 가점 항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부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2.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3.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4.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5.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p>제7조(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①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는 사업주 안전 · 보건교육 과정 이수 여부와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행사 참여 실적,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으로 평가한다.</p> <p>② 사업주 안전 · 보건교육 과정 이수는 사업주(법인의 경</p>

<p>②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과정 이수하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p> <p>③ 사업주 현장 안전·보건활동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p> <p>④ 사업주 안전·보건활동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가목에 따른다.</p> <p>제8조(전담 안전·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p> <p>②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③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p> $\text{안전관리자 정규직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 $\text{보건관리자 정규직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p>④ 둘 이상의 업체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p> <p>⑤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나목에 따른다.</p>	<p>우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공단이 실시하는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을 평가기간 내 이수한 경우에 인정한다.</p> <p>③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행사 참여 실적은 평가기간 내 사업주가 소속 건설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한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위험요인 점검 실적을 평가한다.</p> <p>④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은 평가기간 내 별첨 0에 있는 총 12가지 항목의 평가 체크리스트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p> <p>⑤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0 제0호 가목에 따른다.</p> <p>⑥ 제①항에 있는 구성 항목 중 건설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제6조2항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8조(안전보건활동 촉진)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보건활동 촉진은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과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 전담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으로 평가한다.</p> <p>②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은 조달청 유자격자 등급별 기준으로 구성된 등급기준에 따라 안전보건 조직 구성 여부를 평가한다.</p> <p>③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전담 안전관리자와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비율을 각각 평가한다. 다만,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건설사업장을 보유하지 않은 건설업체는 전담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만 평가한다.</p> $\text{안전관리자 정규직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안전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 $\text{보건관리자 정규직비율(\%)} = \frac{\text{정규직 전담 보건관리자 수}}{\text{선임 의무 전담 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p>가.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평가기간 중 선임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령 제16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선임 의무 인원을 초과하여 선임한 안전·보건관리자 중 정규직이 아닌 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	---

<p>제9조(본사 안전·보건 전담자) 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건설업체 본사에 소속되어 안전·보건업무만 전담하는 자의 수와 본사 안전·보건 조직 구성여부를 평가한다.</p>	<p>나.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행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을 신고한 사업주 소속으로 한다. 라. 전담 안전·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의 배점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은 별표0 제0호에 따른다.</p>
<p>②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는 평가기간 중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p>	<p>④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9조에 따라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기술지도 사항에 대한 미이행 여부를 평가한다.</p>
<p>③ 본사 안전·보건 전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배점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2 제1호다목에 따른다.</p>	<p>⑤ 제①항에 있는 구성 항목 중 건설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제6조2항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2 제2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p>	<p>제9조(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는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와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으로 평가한다.</p>
<p>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는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협력업체 선정 시 협력업체의 안전 관련 수준을 고려하는지 여부를 평가한다.</p>
<p>제11조 삭제</p>	<p>③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은 본사 관리자 및 현장소장, 현장관리자 등이 공인된 공공 및 민간교육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여부를 조달청 유자격자명부의 등급 기준에 따라 횟수로 평가한다.</p>
<p>제12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p>	<p>④ 제①항에 있는 구성 항목 중 건설업체가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 제6조2항의 배점 범위 내에서 세부 항목평가를 조정할 수 있다.</p>
<p>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제10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①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신청하는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0 제0호가목의 배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p>
<p>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가점부여에 대한 판단은 평가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p>	<p>제11조(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건설업체가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한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p>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2조(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활용 실적)</p>

<p>제1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4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실적(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p> <p>제13조(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한다.</p> <p>제14조(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한다.</p> <p>제15조(평가방법)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검토하여 평가한다.</p> <p>②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진위 여부를 본사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③ 공단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용노동부의 5급 이상 공무원 2.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3.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4.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출한 산업재해예방활동 결과에 대한 확인 결과 허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대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점수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p> <p>제1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을 평가한 후 건설업체에서 제출서류를 허위나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연도의 평가점수를 발표하였던 날로 소급하여 영점처리하고 다음 연도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p>
--	--

(별표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배점기준 개정(안)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범위	비 고
공통 항목 (100점)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40	안전·보건 경영 촉진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40	안정적인 현장 안전·보건 활동 지원
	다.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20	전사적인 안전·보건 활동 촉진
가점 항목 (최대 5점)	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	3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촉진
	나.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2	
	다.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2	
	라.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3	
	마.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3	
계		105	100점 초과 시 100점

(별표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개정(안)

1. 공통항목

가. 사업주 안전의식 강화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40)		확인서류
	1)	2)	
○ 사업주 안전·보건교육 이수 실적 * 평가기간 내 1회 이수 시 만점 *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주 대면교육 이수만 인정 (온라인 교육 제외)	10	20	교육 수료증
○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 및 행사 참여 - 안전·보건 간담회 참여 - 안전·보건활동 이행 확인 - 위험요인 점검 * 평가기간 내 10회 이상 참여 시 만점 (월 최대 1회 인정, 10회 미만 참여 시 횟수마다 10% 차등 감점)	10		별지 제1호서식
○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 12개 평가항목 모두 이행 시 만점 (미이행 항목 1개 항목 마다 10% 감점)	20	20	안전보건 경영방침 매뉴얼
*1)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 2) 사업장이 없어 사업주 현장 안전점검 및 행사 참여가 불가능한 건설업체			

* 참고사항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건설업체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사업주교육' 과정 개설·운영

나. 안전·보건 활동 촉진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40)					확인서류
		1)	2)	3)	4)	5)	
○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							
구분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1위~20위 업체	<p>1.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 (해당배점의 7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점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계산식: $x = (21 - \text{해당업체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순위}) \times 0.75 + 4$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 수가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 (x)를 소수점에서 반올림한 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만점의 70%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계산식: $x = (21 - \text{해당업체 조달청 유자격자명부 순위}) \times 0.5 + 3$ </div> <p>2. 본사의 안전·보건 전담 조직 및 전담 인원 (해당배점의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 조직과 전담 임원이 있으면 만점 - 전담 조직이나 전담 임원이 없으면 0점 	10	20	20	20	20	
1~2등급 업체	<p>1.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2명을 포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4명 이상이면 만점*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이면 만점의 70% <p>* 만점: 해당배점의 70%</p> <p>2. 안전·보건 전담 조직이 있으면</p>						

	<p>만점**</p> <p>** 만점: 해당배점의 30%</p>					
3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2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 이상이면 만점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이면 만점의 70% 					
4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3명 이상이면 만점 -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이면 만점의 70% 					
5등급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1명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2명 이상이면 만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1명이면 만점의 70% 					
6등급 이하 업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사에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춘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만점 - 본사에 안전·보건업무 전담 임·직원이 있으면 만점의 70% 					
<p>○ 안전관리자 정규직 비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계산식: $x = (\text{선임 신고된 전담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수} \div \text{대상 안전관리자 수}) \times 100\%$</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직 비율 70% 이상 경우 만점 - 정규직 비율 60% 이상이면 만점 대비 20% 차감 - 정규직 비율 50% 이상이면 만점 대비 40% 차감 - 정규직 비율 40% 이상이면 만점 대비 60% 차감 - 정규직 비율 40% 미만이면 만점 대비 80% 차감 <p>* 단, 정규직 안전관리자는 근속연수 6개월 초 과인 경우에만 인정</p>		10	10	10	20	별지 제2호서식

<p>○ 보건관리자 정규직 비율</p> <p>- 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계산식: $x = (\text{선임 신고된 전담 보건관리자의 정규직 수} \div \text{대상 보건관리자 수}) \times 100\%$ </div> <p>- 정규직 비율 70% 이상 경우 만점</p> <p>- 정규직 비율 60% 이상이면 만점 대비 20% 차감</p> <p>- 정규직 비율 50% 이상이면 만점 대비 40% 차감</p> <p>- 정규직 비율 40% 이상이면 만점 대비 60% 차감</p> <p>- 정규직 비율 40% 미만이면 만점 대비 80% 차감</p> <p>* 단, 정규직 보건관리자는 근속연수 6개월 초과인 경우에만 인정</p>	10	10				별지 제3호서식
<p>○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수준</p> <p>- 재해예방 기술 지도기관 대상 사업장</p> <p>* 지도사항 미이행 여부에 따른 발주처 통보 횟수 (단, 이전 지도사항을 모두 이행하여 발주처 통보 횟수 없을 경우 만점)</p> <p>* 미이행 횟수 1회당 만점 대비 20% 차감, (총 5회 이상 미이행 시 0점)</p>	10		10		20	제출서류 없음
<p>*1) 모든 세부 평가 항목을 받을 수 있는 건설업체</p> <p>2)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 현장이 없는 건설업체</p> <p>3) 전담 보건관리자 배치 현장이 없는 건설업체</p> <p>4) 전담 보건관리자 배치 현장과 재해예방기술지도 이행 수준 현장이 없는 건설업체</p> <p>5)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현장이 없는 건설업체</p> <p>*단, 건설 현장 미보유 건설업체는 본사 안전보건 조직 수준 적정성 및 역량만으로 평가하고 해당 항목에 40점 부여</p>						

* 참고사항: 구분 항목의 순위는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순위에 따름

다. 안전 문화 확산 및 역량 강화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20)		확인서류												
	1)	2)													
○ 협력업체 안전관리 수준평가 * 협력업체 선정 기준 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기준 여부 존재 시 만점	10		협력업체 입찰공고문 또는 내부 협력업체 선정 기준												
○ 관리자급 안전교육 실적 - 평가대상 ; 사업장별 현장소장, 현장 관리자, 본사 관리자 (단, 안전·보건관리자, 행정지원 등은 제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구분</th> <th>평가항목 및 산정기준</th> </tr> </thead> <tbody> <tr> <td>1등급 업체</td> <td>안전보건교육 1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td> </tr> <tr> <td>2등급 업체</td> <td>안전보건교육 70건 이상 이수 시 만점</td> </tr> <tr> <td>3등급 업체</td> <td>안전보건교육 50건 이상 이수 시 만점</td> </tr> <tr> <td>4등급 업체</td> <td>안전보건교육 30건 이상 이수 시 만점</td> </tr> <tr> <td>5등급 이하</td> <td>안전보건교육 10건 이상 이수 시 만점</td> </tr> </tbody> </table> * 단, 만점 기준으로 교육 이수 10% 미달 시마다 만점 대비 20% 차감	구분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1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1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2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7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3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5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4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3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5등급 이하	안전보건교육 1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10	20	교육 수료증
구분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1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10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2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7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3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5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4등급 업체	안전보건교육 3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5등급 이하	안전보건교육 10건 이상 이수 시 만점														
* 안전보건공단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교육기관에서의 안전보건 교육 및 건설현장의 관할 구역내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실시하는 재해예방 관점의 교육 등 포함 * 단, 산안법 및 타법령에 정한 법적 교육 이수기준 제외예시) 산안법 제31조(기초안전보건교육)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기타 재해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 안전교육 등 및 자체 보수교육 제외															
*1) 협력업체를 보유한 종합건설업체 2) 협력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종합건설업체															

2. 가점항목

평가항목 및 산정기준	배점 (5)	확인서류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 여부 - 인증을 받아 인증 유지 중인 경우 3점 - 안전보건공단에 인증 신청을 하여, 인증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점 * 인증유지·신청 등은 평가기간 마지막 날(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함	3	제출서류 없음
○ 안전보건 관련 우수업체 수상실적 -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로부터 안전보건 관련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	2	수상 관련 증명서
○ 산업안전보건공단 내 재정지원 사업 활용 실적 - 산업안전보건공단 재정지원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 사고사망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2	제출서류 없음
○ 시스템 비계 사용 실적 - 민간공사 시스템 비계 사용 현장 비율 계산식: $x = \frac{\text{시스템 비계 사용현장수}}{\text{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수}} \times 100\%$ - 80% 이상 만점 - 65% 이상 ~ 80% 미만이면 만점 대비 25% 차감 - 50% 이상 ~ 65% 미만이면 만점 대비 50% 차감 - 35% 이상 ~ 50% 미만이면 만점 대비 75% 차감	3	제출서류 없음
○ 법령에 따른 자구적 설계변경 요청 및 승인 - 「산업안전보건법」제71조(설계변경 요청)에 따라 건설업체가 가설구조물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설계변경을 요청하고 승인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3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

연구진

연구기관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책임자 :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 백용선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보조원 : 이하경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원)

연구상대역 : 서용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차장)

연구기간

2024. 05. 03. ~ 2024.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4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지표개선 고도화
(2024-산업안전보건연구원-629)**

발행일 : 2024년 10월 31일

발행인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박승현

연구책임자 :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세욱

발행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화 : 052-703-0847

팩스 : 052-703-0334

Homepage : <http://oshri.kosha.or.kr>

I S B N : 979-11-94453-23-9

공공안심글꼴 :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